

■본 번역문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서, 보험의 계약 및 보상은 원문약관에 따릅니다.

## 종합배상책임보험(Ⅰ) 보통약관

이 보험의 담보범위는 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각 조항의 규정에 따릅니다. 이 보험증권을 잘 읽어보시고 이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 및 담보범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보험증권에서 사용하는 「귀하」라 함은 신고란 기재의 기명피보험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회사」라 함은 이 보험을 제공하는 보험회사를 말합니다.

「피보험자」란 제2장 「피보험자」에서 정해진 개인이나 단체를 말합니다. 이 보험증권에서 「 」내에 인용되는 용어는 제5장 「용어의 정의」에 따릅니다.

### 제 1 장 담 보 범 위

#### 담보A. 신체장해 및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1. 회사의 책임범위

가. 회사는 이 보험증권에서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로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추가지급조항의 담보A 및 담보B에서 지급 대상으로 명기되어 있는 금액(또는 서비스)만을 지급(또는 제공)합니다. 이 보험은 보험 기간중에 발생한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만 담보합니다.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는 보험증권사의 「담보지역」에서 발생한 「사고」에 기인된 것이어야 합니다. 회사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다만,

(1) 회사가 지급하는 손해배상책임액은 제3장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2) 회사는 손해배상청구 및 소송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 및 화해를 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담보A나 담보B에서의 화해액, 판결액과 담보C에서의 의료비를 이보험의 보상 한도액까지지급함으로써 회사의 방어권리 및 의무는 종료됩니다.

나. 「신체장해」손해는 「신체장해」로 인한 간호, 휴업 손실 및 사망으로 청구되는 손해배 상책임을 포함합니다.

다. 물리적으로 손상되지 아니한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인한 간접손해인 「재물손해」는 그 「사고」의 원인이 발생했을 때를 사고의 시점으로 간주합니다.

##### 2. 면책조항

이 보험계약은 아래의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가. 피보험자가 예기하였거나 피보험자의 고의로 발생한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 그러나, 신체 또는 재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의 결과로 생긴 「신체장해」는 보상합니다.

나. 계약에 의하여 가중된 신체장해나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1) 「담보계약」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2) 계약이 없었을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손해배상책임

다. 다음과 같은 사유로 피보험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

- (1) 다른 사람을 취하게 하거나 취하도록 기여한 것
  - (2) 법령상의 음주연령에 미달한 사람 또는 주기가 있는 사람에게 주류를 제공한 것
  - (3) 주류의 판매, 증여, 배급 또는 사용에 관한 법령, 규칙
- 이 면책조항은 귀하가 주류의 제조, 배급, 판매, 제공, 공급을 사업으로 하고있을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라. 근로자의 재해보상, 불구폐질급부 또는 실업에 관한 법률, 기타 이와 유사한 법률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책임

마. 아래에 열거한 사람에게 입힌 「신체장해」

- (1)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업무 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입은 「신체장해」
  - (2) 위 (1)의 결과로서 그 근로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가 입은 손해
- 이 면책조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 (1) 피보험자가 사용자로서 또는 다른 자격으로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
  - (2) 신체장해에 의한 손해배상에 대하여 다른 사람과 손해배상책임을 분담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환급하여야 할 책임을 지는 경우

그러나 담보계약상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합니다.

바. (1) 아래의 장소 또는 경우에 공해물질의 배출, 확산, 방출 또는 유출이 있었거나, 있었다고 주장되거나 또는 있을 위험 때문에 발생한 「신체장해」나 「재물손해」

- (가) 귀하가 소유, 임차 또는 점유하는 시설내 또는 그 시설로부터
- (나) 폐기물질의 취급, 보관, 처리, 가공하거나 처치하기 위하여, 귀하가 사용하는 부지내 또는 부지로부터, 또는 귀하나 타인을 위해 사용하는 부지내 또는 부지로부터
- (다) 귀하나 귀하가 법적책임을 부담하는 타인 또는 단체를 위하여 언제라도 폐기물을 운송, 취급, 보관, 처분 또는 가공하고 있을 경우
- (라) 귀하나 귀하를 대신하여 직접간접으로 도급인 또는 하도급인이 아래의 사업을 하고 있는 시설내나 그 시설로부터
  - ① 그 사업과 관련하여 부지내에 공해물질이 반입되었을 때
  - ② 공해물질의 시험, 검사, 청소, 제거 또는 용기에 담아 봉하거나 처리, 독성제거 또는 중화작업을 하였을 때

(2) 정부기관의 지시 또는 요청에 의하여 귀하가 공해물질의 시험, 검사, 청소, 제거, 용기에 담아 봉하거나 처리, 독성제거, 중화작업으로 발생한 손실, 기타 비용

공해물질이란 연기, 증기, 매연, 산, 알칼리, 화학물질 및 폐기물질을 포함하여 고체, 액체, 기체 또는 열성자극물 또는 오염물을 말합니다. 폐기물에는 재생, 수리, 재이용되는 물질을 포함합니다.

사. 피보험자가 소유, 관리, 사용 또는 타인에게 위탁한 항공기와 「자동차」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운행, 임차한 선박으로 생긴 「신체장해」와 「재물손해」 사용이라 함은 운행 및 「화물의 적재나 하역」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아래의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1) 귀하가 소유 또는 임차하는 시설내에 양륙되어 있는 선박
- (2) 귀하가 소유하지 않는 선박으로서,
  - (가) 길이가 25feet미만이고
  - (나) 운임을 받으며 사람이나 물건을 수송하는데 사용되지 않는 것
- (3) 귀하가 소유 또는 임차하는 시설 또는 그 시설의 인접 장소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로서, 귀하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임차하는 것이 아닌 「자동차」
- (4) 항공기, 선박의 소유,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담보계약상 가중된 배상책임
- (5) 「이동장비」에 관한 제5장 용어의 정의 8. 바(2) 또는 바(3)에 규정한 기계의 운행으로 인한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

아. 다음으로 기인하는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

(1) 피보험자가 소유, 운행, 임차하는 「자동차」에 의한 「이동장비」의 운송

(2) 「이동장비」를 시험, 속도경기, 해체경기의 연습, 준비 또는 곡예운전에 사용

자. 선전포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전쟁 또는 전쟁에 수반되는 사태로 생긴 「신체장해」나 「재물손해」전쟁에 내란, 폭동, 반란 또는 혁명이 포함됩니다. 이 면책조항은 계약상의 가중책임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차. 아래의 「재물손해」

(1) 귀하가 소유, 임차 또는 점유하는 재물

(2) 귀하가 판매, 양도 또는 포기한 시설로서 「재물손해」가 그 시설의 일부에서 발생할 때

(3) 귀하가 임차하는 재물

(4) 귀하의 보관, 관리 또는 지배하에 있는 동산

(5) 귀하 또는 귀하를 대신하는 도급인 또는 하도급인이 직접 간접을 불문하고 작업을 하는 부동산의 특정부분의 손해가 그 작업에서 발생하였을 경우

(6) 「귀하의 작업」이 부적절하였기 때문에 복구, 수리, 교환을 해야만 하는 재물의 그 특정부분 그러나 그 시설이 「귀하의 작업」의 대상이며 귀하가 점유, 임차하는 것이 아닐 때에는 이 면책조항 (2)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철로부설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이 면책조항의 (3), (4), (5) 및 (6)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생산물 완성작업위험」이 포함되는 「재물손해」에 대하여는 이 면책조항(6)은 적용 되지 아니합니다.

카. 「귀하의 생산물」 또는 그 일부에 기인하여 「귀하의 생산물」에 끼친 「재물손해」

타. 「생산물/완성작업위험」이 포함된 「귀하의 작업」, 또는 그 작업의 일부에서 발생한 「귀하의 작업」에 끼친 「재물손해」

다만 손상된 작업이나 손해를 야기한 작업을 귀하를 위하여 하도급인이 수행하였을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파. 「손상재물」 또는 물리적손상을 입지 않은 재물손해로서 아래의 사유에 기인하는 경우

(1) 「귀하의 생산물」 또는 「귀하의 작업」의 결함, 불비, 부적절 또는 위험한 상태

(2) 귀하나 귀하의 대리인의 계약상의 이행지체 또는 불이행

그러나, 「귀하의 생산물」 또는 「귀하의 작업」이 본래의 용도에 사용된 후에 급격하고 우연하게 「귀하의 생산물」 또는 「귀하의 작업」에 입힌 물리적손상으로 다른 재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는 보상합니다.

하. 다음의 사용불능, 회수, 철수, 조사, 수리, 교환, 조정, 제거, 처분으로 귀하 또는 다른 사람이 입은 손실, 경비 또는 지출에 대한 손해배상

(1) 「귀하의 생산물」

(2) 「귀하의 작업」

(3) 「손상재물」

다만, 이들 생산물, 작업, 재물에 결함, 불비, 부적절 또는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명 되거나 그런 의심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또는 사용하는 사람이나 단체로부터 회수 또는 철수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면책조항 「다」에서 「하」까지는 귀하가 임차하는 시설의 화재손해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제3장 보상한도액에 명기한 별도의 한도액을 적용합니다.

## 담보B. 인격침해 및 광고침해

## 1. 회사의 책임범위

가. 회사는 이 보험으로 담보되는 「인격침해」 또는 「광고침해」로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추가지급조항의 담보A 및 담보B에서 지급대상으로 명기되어 있는 금액(또는 서비스)만을 지급(또는 제공)합니다. 회사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다만,

(1) 회사가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제3장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2) 회사는 손해배상청구 및 소송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 및 화해를 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담보「가」나 담보「나」에서의 화해액 또는 판결액과 담보「다」에서의 의료비를 이 보험의 보상한도액까지 지급함으로써 회사의 방어권리 및 의무는 종료됩니다.

나. 이 보험에서 담보되는 「인격침해」라 함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1) 「담보지역」내에서 보험기간중 발생한 인격침해

(2) 귀하의 사업수행중 발생한 인격침해. 그러나, 귀하 또는 귀하를 위한 광고, 출판물, 라디오방송, TV 방송으로 발생한 인격침해는 보상되지 아니합니다.

다. 이 보험에서 담보되는 「광고침해」라 함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1) 「담보지역」내에서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광고침해

(2) 귀하의 제품 및 서비스에 관한 광고로 발생한 광고침해

## 2. 면책조항

이 보험계약은 아래의 침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가. 아래의 사유에 의한 「인격침해」 또는 「광고침해」

(1) 허위임을 알면서도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의해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자료의 공표로 발생한 경우

(2) 보험기간 개시전에 구두 또는 서면 자료가 최초로 공표되어 발생한 경우

(3) 피보험자의 또는 피보험자의 동의하에 고의적인 형법위반으로 발생한 경우

(4) 계약에 의하여 가중된 경우. 그러나 계약이 없었더라도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을 보상합니다.

나. 아래의 사유로 인한 「광고침해」

(1) 계약을 위반한 경우. 그러나 묵시계약상 광고기획의 유용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2) 제품 또는 서비스가 광고된 품질 또는 성능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3) 제품, 서비스의 가격표시가 잘못된 경우

(4) 광고, 라디오방송, 출판물 또는 TV방송을 사업으로 하는 피보험자에 의해 위법으로 발생한 경우

## 담보C. 의료비 지급

### 1. 회사의 책임범위

가. (1) 보험기간중에 「담보지역」내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2) 사고일자로부터 1년이내에 발생하여 회사에 통지된 치료비로서

(3) 피해자가 회사의 요청에 따라, 회사의 비용으로 회사가 지정한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회사는 아래에 기재된 신체장해사고로 발생한 의료비를 보상합니다.

- (1) 귀하가 소유 또는 임차하는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 (2) 귀하가 소유 또는 임차하는 시설에 인접하는 장소에서 발생한 장소
  - (3) 귀하의 사업활동에 기인된 사고
- 나. 회사는 필요하고도 유익한 비용으로서 피보험자의 과실유무를 불문하고 보상한도액 내에서 아래의 의료비를 보상합니다.
- (1) 사고발생시의 응급처치 비용
  - (2) 치료, 수술, X선검사, 보철기구를 포함한 치과치료비
  - (3) 구급차, 입원, 전문간호, 장례비

## 2. 면책조항

이 보험계약은 아래와 같은 의료비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가. 피보험자 자신의 「신체장해」
- 나. 피보험자를 위해 또는 피보험자를 대신해서 고용된 사람, 또는 피보험자에게 세든 사람에 대한 「신체장해」
- 다. 귀하가 소유 또는 임차하는 시설을 통상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가 입은 「신체상해」
- 라. 피보험자의 근로자 여부를 불문하고 노동자재해보상에 관한 법률, 폐질급부에 관한 법률, 기타 이와 유사한 법률에 의해 보상되는 「신체상해」
- 마. 운동경기에 참가중에 입은 「신체상해」
- 바. 「생산물/완성작업위험」에 포함되는 「신체상해」
- 사. 담보A에서 보상하지 않는 「신체상해」
- 아. 선전포고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전쟁 또는 전쟁에 수반되는 사태로 생긴 「신체장해」전쟁 이라는 내란, 폭동, 발란 또는 혁명을 포함합니다.

## 추가지급조항 - 담보A 및 담보 B

회사는 회사가 방어하는 손해배상청구 또는 「소송」에 관하여 아래의 배움을 보상합니다.

1. 회사가 지출한 모든 비용
2. 신체장해 배상책임담보가 적용되는 차량사용에 기인하는 사고, 또는 도로교통법규 위반으로 필요한 보석보증보험료를 250달러까지 보상합니다. 그러나, 회사는 보석보증을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3. 증권상의 보상한도액이내의 보증금액에 대한 차입해제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차입해제보증을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4. 회사의 요청에 따라 조사 또는 손해배상청구 및 「소송」에 대한 방어에 협조하는 데 소요된 비용과 일당 \$100한도내의 소득상실
5. 피보험자에게 부과된 모든 소송비용
6. 회사가 지급하는 판결액에 대해서 피보험자에게 부과되는 예비판결의 이자. 다만, 회사가 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통지하였다면 통지후의 예비판결의 이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7. 판결확정후에 발생하는 판결액에 대한 이자. 다만, 회사가 이 보험의 보상한도액내에서 판결액의 일부를 법원에 지급, 지급제의, 또는 공탁할 때까지 발생한 것에 한합니다.

추가지급조항에서 보상되는 비용은 보상한도액을 초과하여 보상합니다.

## 제 2 장 피 보 험 자

### 1. 신고란의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신고란에 개인으로서 기재되었을 때에는 귀하 및 귀하의 배우자가 피보험자가 됩니다. 다만, 귀하가 단독사업자일 경우에 한합니다.
- 나. 조합 또는 공동사업체로서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귀하가 피보험자가 됩니다. 귀하의 업무활동범위내에서 공동사업체나 조합의 경영자의 일원인 자 및 그 배우자도 피보험자가 됩니다.
- 다. 조합 또는 공동사업체 이외의 단체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귀하는 피보험자가 됩니다. 귀하의 업무 집행임원 및 이사는 그 업무에 한하여는 피보험자가 되며 주주는 또한 그 책임범위내에서 피보험자가 됩니다.

### 2. 아래에 기재된 사람도 피보험자가 됩니다.

- 가. 업무집행임원이외의 근로자. 다만, 업무범위내의 행위에 한합니다. 그러나, 다음의 근로자는 피보험자가 아닙니다.
  - (1) 업무수행중에 귀하 또는 동료근로자에게 「신체장해」나 「인격침해」를 입혔을 경우
  - (2) 전문직으로서 건강관리업무의 제공 또는 제공할 것을 태만히 하여 「신체장해」나 「인격침해」를 입혔을 경우
  - (3) 근로자 또는 구성원(조합 또는 공동사업체의 경우)이 소유, 점유, 임대하고 있는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 나. 귀하의 부동산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개인(근로자는 제외)또는 단체
- 다. 귀하가 사망했을 경우 법정대리인이 선임될 때까지 귀하의 재산의 관리 또는 사용으로 발생하는 배상책임 범위내에 재산관리인
- 라. 귀하가 사망했을 경우 그 직무범위내에서의 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은 이 보험증권하에서 갖는 귀하의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합니다.

### 3. 자동차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이동장비」에 관하여는 아래에 기재된 사람도 피보험자로 봅니다.

- (1) 귀하의 허가를 받아 공도에서 이동장비를 운전중인 자
  - (2) 위 (1)의 자의 지휘감독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할 개인 또는 단체. 다만, 이동장비조작으로 일어나는 배상책임의 범위내로 하고, 이때 개인이나 단체에 적용될 다른 배상책임보험이 없었을때에 한합니다.
- 그러나 아래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되지 아니합니다.
- 가. 이동장비를 운행중인 사람의 동료에 대한 「신체장해」
  - 나. 귀하나 귀하의 근로자 또는 이 보험에서 피보험자가 되는 사람의 근로자가 소유, 임차, 점유하고 있는 재물에 입힌 손해

### 4. 조합 또는 공동사업체이외의 단체로서 귀하가 신규로 취득 또는 설립하고 경영권 또는 과반수의 경영권을 취득한 단체는 피보험자로 간주합니다. 다만, 그 단체에 적용되는 다른 유효한 보험이 없을 때에 한합니다.

- 가. 이 조항에서는 그 단체의 취득 또는 설립일 이후 90일까지만 담보되며, 보험기간이 먼저 끝날 때는 그때를 보험이 끝나는 것으로 합니다.
- 나. 단체의 취득 또는 설립일 이전에 발생한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에 대하여 담보A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다. 단체의 취득 또는 설립일 이전의 행위로 발생한 「인격침해」 또는 「광고침해」에 대하여

담보B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신고란에 기명피보험자로서 기재되어있지 않은 현재 또는 과거의 조합 또는 공동사업체의 사업수행에 관련되는 개인 또는 단체는 피보험자로 보지아니합니다.

### 제 3 장 보 상 한 도 액

#### 1. 회사는

가. 피보험자의 수

나. 손해배상청구의 건수 또는 제기된 소송의 수

다. 손해배상청구 또는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의 수를 불문하고 회사가 지급할 보상한도액은 신고란기재의 금액으로 하고 아래의 규정에 따라 지급합니다.

#### 2. 총보상한도액은 아래의 항목에 대하여 회사가 지급할 최고액을 말합니다.

가. 담보「C」에 따른 의료비 및

나. 담보「A」 및 「B」에 따른 손해배상금. 그러나 「생산물/완성작업」에서 보상되는 장해 또는 손해에 손해 배상금은 제외됩니다.

#### 3. 생산물/완성작업위험에 대한 총보상한도액은 「생산물/완성작업위험」에서 보상되는 장해 또는 손해에 따른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담보「A」에 있어서 회사가 지급하는 최고액이 됩니다.

#### 4. 위 2에 있어서 인격침해 및 광고침해한도액은 개인 또는 단체가 「인격침해」 또는 「광고침해」를 입힘으로서 발생하는 모든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회사가 담보「B」에 의해 지급할 최고액이 됩니다.

#### 5. 위 2나 3의 어느것을 적용하든 1사고당 한도액은 한 사고로 발생하는 모든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비용에 대하여 회사가 지급할 최고액이 됩니다.

가. 담보「A」에 의한 손해배상금

나. 담보「B」에 의한 의료비

#### 6. 위 5의 화재손해보상한도액은 하나의 화재사고로 귀하가 임차하고 있는 시설의 화재손해에 대하여 회사가 담보「A」에 의하여 지급할 최고한도액입니다.

#### 7. 위 5의 의료비한도액은 한 피해자가 입은 「신체장해」로 발생하는 모든 의료비에 대하여 담보「C」에 의하여 회사가 지급하는 최고액이 됩니다.

이 보험증권의 한도액은 신고란에 기재된 보험기간개시일로부터 시작하여 매 연도별 및 12개월미만의 추가기간으로 연장이 되지 않을 때에는 12개월미만의 잔여기간에 개별적으로 적용됩니다. 보험기간이 추가 연장될 경우 연장된 기간은 원보험기간을 구성하는 것으로 하여 한도액이 적용됩니다.

### 제 4 장 일 반 조 항

#### 1. 파 산

회사는 피보험자가 파산 또는 지급불능이 되어도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 2. 사고발생, 손해배상청구 또는 소송시의 피보험자의 의무

가. 귀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하며 알려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사고」가 어떻게, 언제, 어디서 발생했다는 것
- (2) 피해자 및 증인의 성명 및 주소

나.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청구나 「소송」이 제기되면 귀하는 회사에 즉시 서면으로 이를 알려야 합니다.

다. 귀하 또는 사고와 관계되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 (1) 손해배상청구나 「소송」에 관련한 청구서, 통지서, 소환장, 기타의 서류를 받는 즉시 사본을 회사에 제출할 것
- (2) 회사가 기록이나 자료를 입수할 수 있도록 할 것
- (3) 손해배상청구나 「소송」에 관한 조사, 합의해결 또는 응소에 대하여 회사에 협조할 것
- (4) 이 보험에서 담보되는 장해 또는 손해로 타인에게 대위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 회사의 요청이 있으면 협조할 것

라. 응급처치비용을 제외한 어떤 비용도 회사의 동의없이 임의로 지급하거나 의무를 부담할 수 없습니다.

## 3. 회사에 대한 소송

이 보험계약하에서는 누구든지 아래의 권리를 가질 수 없습니다.

가. 회사와 함께 공동피고로 참가하거나 피보험자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회사를 공동 피고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

나. 이 보험계약에서 정하는 모든 조건을 완전히 이행하지 않고 회사를 상대로 이 보험증권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는 것.

사실심리를 거친후에 합의에 따른 화해 또는 피보험자에 대한 확정판결에 의한 손해를 보상받기 위하여 누구나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보험증권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나 이 보험에서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러지 아니합니다. 합의에 의한 화해란 회사, 피보험자 및 손해배상청구권자나 그 법률상의 대리인이 서명한 화해서 및 면책증서를 말합니다.

## 4. 다른 보험과의 관계

회사가 이 보험증권 담보 A 또는 담보 B에서 보상하는 손해를 피보험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다른 보험이 있으면 회사의 지급의무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보상합니다.

가. 제1순위의 보험

아래의 「나」항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보험은 우선 적용됩니다. 이 보험이 우선 적용되고 다른 보험이 이 보험에 대한 우선적용증권이 아닐 경우 회사는 다른 보험에 관계없이 보험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기타 모든 보험에 대해서는 「다」방법에 따라 분담합니다.

나. 초과액보험

다른 보험이 우선순위의 보험이거나, 초과액 보험이거나, 후순위 보험 및 기타 다른 방식의 보험여부에 관계없이 다음의 경우에는 이 보험은 초과액만 담보합니다.

- (1) 다른보험이 「귀하의 작업」에 대한 화재보험, 확장담보보험, 건설공사보험, 시설공사보험, 기타 유사한 보험일 때
- (2) 다른 보험이 귀하가 임차한 시설에 대한 화재보험일 때
- (3) 제1장 담보「A」의 면책조항「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항공기, 「자동차」 또는 선박의

사용, 관리에 기인하는 손해가 발생했을 때 이 보험이 초과액담보일 때에는 다른 보험회사가 방어의무를 지는 손해배상청구 또는 [소송]에 대하여 회사는 담보[A] 및 담보[B]의 방어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다른 모든 회사가 방어를 하지 않을 때에는 우리회사가 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보험자가 다른 모든 보험회사에 대하여 갖는 권리를 회사가 취득합니다.

이 보험이 다른 보험의 초과액만을 담보할 때는 다음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했을 때에만 회사는 이를 분담 지급합니다.

(1) 이 보험이 없었다면 다른 모든 보험이 손해에 대하여 지급할 수 있는 합계금액

(2) 다른 모든 보험의 면책금액 및 자가보험액으로 되어있는 금액의 총액

잔여 손해액이 발생했을 때에는 회사는 이 초과액보험조항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보험과 특별히 이 보험의 신고란기재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담보할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 아닌 다른 보험과는 그 잔여손해액을 분담합니다.

#### 다. 분담방법

다른 모든 보험이 균등액방식에 의한 분담을 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회사도 역시 이 방법을 따릅니다. 이 방법에 따라 지급할 때 각 보험회사는 각자의 보상한도액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또는 손해액이 전액 보상될 때까지 어느것이 먼저 일어나든 그때까지 책임을 집니다. 다른 보험이 균등액방식이 아닌 경우 회사는 보상한도액에 따라 안분합니다. 이 방식은 모든 보험회사의 보상한도액의 합계에 대한 각사의 보상한도액의 비율에 따라 지급합니다.

### 5. 보험료정산

가. 이 보험계약의 보험료는 회사가 정하는 방법 및 요율에 따라 계산합니다.

나. 이 증권에 선납보험료로서 기재된 보험료는 예치보험료에 불과하여 보험기간이 끝난후 해당기간에 대한 받을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제1순위 기명피보험자는 정산보험료를 통지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납입하여야 하며 선납보험료가 경과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제1순위 기명피보험자에게 초과금액을 환급합니다.

다. 제1순위 기명피보험자는 보험료의 계산에 필요한 자료를 비치하여야 하며 회사의 요청에 따라 그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6. 진술사항

귀하는 이 보험증권의 다음사항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가. 신고란 기재사항이 정확하고 완전한 것이며

나. 그 기재사항은 귀하가 회사에 알린 사항과 일치하고

다. 회사는 귀하의 진술을 신뢰하여 보험증권을 발행한 것

### 7. 피보험자의 분리

보상한도액 및 제1순위 기명피보험자에게 이 보험계약상 특별히 양도한 권리와 의무를 제외하고는 이 보험은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가. 기명피보험자를 단독 기명피보험자로 간주하며,

나. 손해배상청구 및 「소송」이 제기된 각 피보험자별로 이 보험계약을 적용합니다.

### 8. 대위권의 이전

이 보험계약에 따라 회사가 손해의 전부나 일부를 지급한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취득합니다. 피보험자는 손해발생후 이 손해배상청구권을 저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회사의 요청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든가 회사에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하고 그 행사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9. 해 지

가. 신고란에 기재된 제1순위 기명피보험자가 이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지통지서를 회사에 발송함으로써 해지됩니다.

나. 회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보험료의 미납으로 해지할 경우 해지효력 발생일로부터 10일 이전에 제1순위 기명피보험자에게 해지통지서를 발송하면 해지됩니다.

(2) 다음의 사유로 해지할 경우 해지효력발생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제1순위 기명피보험자에게 해지통지서를 발송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회사가 안 때로부터 30일이 지났거나 회사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보험계약 청약서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사실 그대로 알리지 아니하였을 때

② 현저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③ 피보험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하여 위험이 현저히 변경 또는 증가된 때

④ 피보험자가 약관12에서 정한 조사를 거부 또는 회피한 때

다. 회사는 제1순위 기명피보험자의 최근의 주소로 통지합니다.

라. 해지통지서에는 해지효력발생일을 명기하며, 보험기간은 해지효력발생일에 끝납니다.

마. 이 계약의 해지에 따라 회사가 보험료를 환급할 경우에는 제1순위 기명피보험자에게 환급보험료를 지급합니다. 회사가 해지한 때는 일할로 계산한 보험료를 환급합니다.

제1순위 기명피보험자가 해지한 때에는 경과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을 지급합니다. 환급보험료가 지급되기전이라도 해지효력은 유효합니다.

바. 통지서를 우송한 경우 우송증명만으로도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 10. 변 경

이 보험증권은 보험계약에 관한 귀하와 회사의 모든 합의사항에 따른 것입니다. 신고란에 기재된 제1순위 기명피보험자는 회사가 동의를 얻어 이 보험증권의 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증권의 보험조건은 회사가 발행하는 배서에 의해서만 수정 또는 제외되며 그 배서는 이 보험증권의 일부가 됩니다.

## 11. 장부 및 서류의 조사

회사는 보험기간중 또는 회사에서 정한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언제든지 이 보험증권과 관련되는 귀하의 장부 및 서류를 조사, 검사할 수 있습니다.

## 12. 조사(손해사정)

회사는 아래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가집니다. 그러나

가. 수시로 조사를 하는 것

나. 회사가 발견한 상황을 귀하에게 통지하는 것

다. 변경을 권유하는 것

조사, 통지, 권유사항은 보험가입 적합성과 보험료에 관한 사항에 한정됩니다. 회사는 안전도를 조사하는것은 아니며, 근로자 또는 일반대중의 건강이나 안전을 제공하는 사람 또는 단체로서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는 그 상황이

(1) 안전 또는 건전하다거나

(2) 법률, 규칙, 시행령 또는 어떤 기준에 합치한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조항은 회사뿐만 아니라 보험에 관한 조사, 통지 또는 권유를 하는 요율산정기관, 자문기관, 요율 제공기관 또는 기타 유사한 기관에도 적용됩니다.

### 13. 보험료

신고란에 기재된 제1순위 기명피보험자는,  
가. 회사에 대하여 모든 보험료납입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나. 회사가 지급하는 환급보험료의 수취인이 됩니다.

### 14. 권리 및 의무의 양도

귀하가 사망할 경우를 제외하고 귀하가 이 증권하에 갖는 권리 및 의무는 회사의 서면 동의 없이는 양도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법정대리인은 그 직무범위 내에서 귀하의 권리 및 의무를 갖습니다. 귀하의 법정대리인이 결정되기까지는 귀하의 임시대리인이 그 재산관리의 범위내에서 귀하의 권리와 의무를 갖습니다.

## 제 5 장 용 어 의 정 의

1. 「광고침해」라 함은 다음의 행위로 발생한 침해를 말합니다.

- 가. 구두 또는 출판물로 개인이나 단체를 중상, 비방하거나 개인 또는 단체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중상
- 나. 구두 또는 출판물에 의한 사생활 침해
- 다. 광고기획 또는 사업방식의 유용
- 라. 저작권, 타이틀 또는 표어의 침해

2. 「자동차」란 도로상을 주행하기 위해 설계된 육상에서 사용하는 원동기부 차량, **trailer** 또는 **semi-trailer** 및 이들에 장착된 장치를 말하며, 이동장비는 제외됩니다.

3. 「신체장해」라 함은 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

4. 「담보지역」이라 함은 아래의 지역을 말합니다.

- 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국가
- 나. 공해 또는 공공. 그러나 장해 또는 손해가 위 「가」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로부터 또는 그 국가를 여행하거나 수송하는 중에 발생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 다. 다음의 경우에는 세계 전지역
  - (1) 장해 또는 손해가 아래에 기인하여 발생하였을 경우
    - (가) 위 「가」의 지역내에서 귀하가 제조, 판매한 제품
    - (나) 위 「가」지역내에 거주지가 있는 개인의 활동. 다만 사업활동의 목적으로 단기간 거주지를 이탈했을 때에 한합니다.
  - (2)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이 위 「가」지역내에서 소송이나 회사가 합의한 화해액 한도내에서 확정되었을 경우

5. 「손상재물」이란 아래의 사유로 사용할 수 없거나 실용성이 감소된 귀하의 생산물 또는 귀하의 작업이외의 유체물을 말합니다.

- 가. 결함, 불완전, 부적합 또는 위험이 내재되어 있는 귀하의 생산물 또는 귀하의 작업이

관련되었을 때나

- 나. (1) 귀하의 생산물이나 귀하작업을 수리, 대체, 조정 또는 제작하거나,  
(2) 계약조건을 이행하면 재물을 수리복구하여 사용할 수 있어도 귀하가 계약상의 조건을 수행할 수 없을 때

6. 「담보계약」이란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합니다.

가. 시설의 임대차계약

나. 철로부설사용계약

다. 차량이나 보행자 전용 철도 건널목 동일평면에 관한 지역권 또는 사용권계약

라. 기타의 지역권. 그러나 철도 부지내 또는 부지로부터 50feet까지의 인접지에서 행하는 건설작업이나 해체작업에 관한 지역권계약은 제외합니다.

마. 자치단체를 위한 작업에 관련된 것을 제외한 조례에 따른 자치단체에 대한 보상계약

바. 승강기 보수계약

사. 신체장해나 재물손해가 발생하기전에 타인이 제3자에게 「신체장해」나 「재물손해」를 입힘으로써 귀하가 불법행위책임이라 함은 계약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그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배상책임을 말합니다.

「담보계약」에서 아래의 계약사항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가. 아래의 사유로 발생하는 장해나 손해로 건설기사, 토목기사, 측량기사에 대한 보상

(1) 지도, 도면, 의견서, 보고서, 조사서, 주문변경서, 설계서 또는 명세서의 작성 승인 또는 이의 불이행

(2) 감독이나 지시 소홀

나. 피보험자가 건축기사, 토목기사 또는 측량기사로서 위 「가」의 직무를 포함하여 감독, 검사, 기타 기술 용역제공등의 전문직업상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장해 또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계약

다. 귀하가 임차한 시설의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어떤 개인이나 단체에게 보상할 책임이 있는 계약

7. 「화물의 적재나 하역」이라 함은 다음과 같은 재물의 취급을 말합니다.

가. 재물이 항공기, 선박 또는 「자동차」에 옮길 것을 승낙한 장소로부터 재물이 이동한후에

나. 항공기, 선박 또는 「자동차」내에 있는 동안

다. 항공기, 선박 또는 「자동차」로부터 최종목적 장소에 재물이 이동하고 있는 동안. 그러나, 「화물의 적재나 하역」에는 손수레 이외의 항공기, 선박 또는 「자동차」에 장착되어 있지 않은 기계장치로 재물을 옮기는 것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8. 「이동장비」라 함은 아래의 것 중 육상에서 사용되는 차량(여기에 장착하는 기계 또는 장치를 포함)을 말합니다.

가. Bulldozer, 농기계, fork-lift 및 공도이외에서 사용하도록 고안된 기타의 차량

나. 귀하가 소유 또는 임차하는 시설 및 이에 인접하는 장소에서만 사용하기 위해 관리하는 차량

다. 무한궤도를 주행하는 차량

라. 자체추진력 여부에 관계없이 아래의 기계를 항구적으로 장착한 기동성을 목적으로 하는 차량

(1) 파워크레인, 쇼벨, 로다, 굴삭천공기

(2) 그라이더, 스크레퍼, 로울러 등의 도로건설 또는 포장용 기계

마. 위의 가. 나. 다. 라에 해당되지 않는 차량으로 자력으로 주행하지 못하고 다음의 장비에

오로지 기동성을 주기 위하여 항구적으로 장착된 차량

(1) 에어컴프레서, 펌프, 발전기(분무용, 용접용, 빌딩청소용, 지질조사용, 조명용 및 우물탐사용 장비포함)

(2) 고소작업용 차량 및 작업원의 승강용 기계장치

바. 위의 가. 나. 다. 라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으로 주로 사람 또는 하물의 수송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차량. 그러나, 장치가 항구적으로 부착되어 있는 다음의 자력주행차량은 「이동장비」로 보지 않고 「자동차」로 봅니다.

(1) 주로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안된 장비

(가) 제 설

(나) 도로건설 및 포장공사가 아닌 도로의 보수관리

(다) 도로청소

(2) 작업원의 승강용 기계장치로서 자동차 또는 truck의 차대에 장착된 고소작업용 차량 및 이와 유사한 장치

(3) 에어컴프레서, 펌프, 발전기(분무용, 용접용, 빌딩청소용, 지질조사용, 조명용 및 우물탐사용기계 포함)

9. 「사고」라 함은 급격하게 발생하는 것을 포함하여 사실상 같은 종류의 일반적으로 유해한 상태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것을 포함합니다.

10. 「인격침해」란 아래의 사유로 발생하는 손해로서 「신체상해」이외의 것을 말합니다.

가. 불법체포, 불법감금 또는 불법구치

나. 무고에 기인하는 소추

다. 주거침입 또는 불법퇴치

라. 구두 또는 출판물로 개인이나 단체를 중상, 비방하거나 개인이나 단체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중상

마. 구두 또는 출판물에 의한 사생활 침해

11. 가. 「생산물/완성작업위험」은 귀하가 소유, 임차하는 시설밖에서 「귀하의 생산물」 또는 「귀하의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신체장해」 및 「재물손해」를 말합니다. 그러나, 다음사항은 제외합니다.

(1) 귀하가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생산물

(2) 아직 완성 또는 방치되지 않은 작업

나. 아래 시기중 먼저 도래한 때를 「귀하의 작업」이 완성된 것으로 봅니다.

(1) 귀하가 체결한 계약서상 모든 작업이 완료되었을 때

(2) 귀하가 체결한 계약서상 여러장소에서 작업을 수행할 경우 어느 한 장소에서 모든 작업이 완료되었을 때

(3) 동일 작업장내에서 작업하고 있는 다른 도급인 또는 하도급인 이외의 개인 또는 단체가 작업의 일부를 본래의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검장비, 보수관리, 조정, 수리 또는 교환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작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완성된 작업으로 간주합니다.

다. 다음에 기인하는 「신체장해」 나 「재물손해」는 생산물 위험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1) 재물의 수송. 그러나, 재물의 「적재 및 하역」중에 차량상태에 기인하는 장해 및 손해는 제외합니다.

(2) 공구류, 부착되지 않은 장치 또는 방치되거나 사용되지 않은 재료

(3) 이 보험증권이나 회사의 지침서상 생산물 또는 완성작업에 분류되는 생산물이나

## 완성작업

12. 「재물손해」라 함은 다음을 말합니다.

- 가. 유체물에 입힌 물리적 손상을 말하며, 이에 따르는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를 포함합니다.
- 나. 물리적으로 손상되지 아니한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

13. 「소송」이란 이 보험에서 보상되는「신체장해」, 「재물손해」, 「인격침해」 또는 「광고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말합니다. 「소송」에는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조정절차를 포함합니다.

14. 「귀하의 생산물」이란 다음을 말합니다.

- 가. 아래의 사람이 제조, 판매, 취급, 공급, 또는 처분하는 부동산 이외의 제품

(1) 귀하

(2) 귀하의 이름으로 거래하는 타인

(3) 귀하가 인수한 사업이나 취득한 자산에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 나. 위 「가」의 제품에 관련하여 공급된 용기(차량은 포함되지 않음), 재료, 부품, 내구성 또는 장치

「귀하의 생산물」에는 위 「가」 또는 「나」에 포함되는 품목의 적합성, 품질, 내구성 또는 성능에 대한 보증 또는 설명서를 포함합니다. 「귀하의 생산물」에는 판매하지 않고 타인이 사용하도록 임대하거나 비치한 자동판매기등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15. 「귀하의 작업」이란 아래의 경우를 말합니다.

- 가. 귀하가 시공했거나 귀하를 대신하여 수행한 작업

- 나. 위 「가」의 작업에 관련하여 공급된 재료, 부품 또는 장치

「귀하의 작업」에는 위 「가」 또는 「나」에 포함되는 품목의 적합성, 품질, 내구성 또는 성능에 대한 보증 또는 설명서를 포함합니다.

## 오염배상책임 확장담보 특별약관

제1장 담보 「A」의 면책조항 「마」의 (1)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추가 피보험자(판매인) 특별약관

- 스케줄 -

추가 피보험자(판매인) 성명:

귀하의 생산물:

(위에 아무 것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면 신고란에 기재된 사항을 따릅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 판매인이 영업활동중 공급 또는 판매하는 스케줄에 기재된 「귀하의 생산물」로 발생하는 「신체장해」나 「재물손해」에 관하여는 스케줄에 기재된 아래의 판매인인 개인이나 단체도 제2장의 피보험자로 봅니다.

1. 이 보험은 판매인에 관하여 아래에 기인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가. 계약에 의하여 가중된 「신체장해」나 「재물손해」. 그러나, 계약이 없었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였을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나. 귀하가 보증하지 아니한 명시의 보증

다. 판매인의 고의에 의한 생산물의 물리적 또는 화학적 변경

라. 재포장. 그러나, 제조업자의 지시에 따라 조사, 전시, 시험, 부품교환만의 목적으로 포장을 벗긴 후 다시 원상태로 재포장하였을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마. 판매인이 생산물을 공급, 판매하는 통상적인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검사, 조정, 시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것

바. 전시, 설치, 서비스 또는 수리

그러나, 판매업자의 구내에서 생산물의 판매와 관련하여 위의 작업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사. 귀하가 공급 또는 판매한 생산물을 판매인이 또는 판매인을 위해서 상표를 붙이거나 상표를 바꾸거나 또는 다른 물건의 용기, 부품 또는 성분으로 사용하는 것

2. 이 보험은 귀하의 생산물과 그 생산물의 성분, 부품, 용기를 구입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생산물/완성작업위험 부담보 특별약관

이 보험은 「생산물/완성작업위험」으로 발생하는 「신체장해」 및 「재물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특정 전문직업 부담보 특별약관

- 스케줄 -

특정 전문직업 내용

- 1.
- 2.
- 3.

(위에 아무 것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면 신고란의 기재사항에 따릅니다.)

이 보험은 위의 스케줄에 기재된 전문직업으로 발생하는 「신체장해」, 「재물손해」, 「인격침해」 또는 「광고침해」를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인격침해 및 광고침해 부당보 특별약관

이 보험의 제1장 담보B는 보상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그에 관한 제반 규정도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광고침해 부당보 특별약관

1. 신고란에 기재된 담보「B」의 「인격침해」 및 「광고침해」는 담보「B」. 「인격침해」로 대체됩니다.

2. 제1장 담보「B」의 「인격침해」 및 「광고침해」는 아래의 담보「B」. 「인격침해」로 대체 됩니다.

### 1. 담보범위

회사는 이 보험으로 담보되는 「인격침해」로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회사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한 권리나 의무를 가집니다. 다만,

가. 회사가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제3장 보상한도액에서 정해진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나. 회사는 어떠한 손해배상청구나 소송도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사 및 화해를 할 수 있습니다.

다. 회사가 담보「A」나 담보「B」에서의 화해액 또는 판결액과, 담보「C」에서의 의료비를 이 보험의 보상한도액까지 지급함으로써 회사의 방어권리 및 의무는 종료됩니다.

이 보험에서 담보되는 「인격침해」라 함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가. 「담보지역」내에서 보험기간중 발생한 「인격침해」

나. 귀하의 사업수행중에 발생한 「인격침해」. 그러나, 귀하 또는 귀하를 위한 광고, 출판물, 라디오방송, TV방송으로 발생한 인격침해는 보상되지 아니합니다.

### 2. 면책조항

이 보험계약은 아래의 침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가. 아래의 사유에 의한 「인격침해」

(1) 허위임을 알면서도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의해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자료의 공표로 발생한 경우

(2) 보험기간 개시전에 구두 또는 서면자료가 최초로 공표되어 발생한 경우

(3) 피보험자의 또는 피보험자의 동의하에 고의적인 형법위반으로 발생한 경우

(4) 계약에 의하여 가중된 경우, 그러나, 계약이 없었더라도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3. 제3장 보상한도액의 4를 아래 내용으로 대체합니다.

4. 위2에 있어서 「인격침해」에 대한 보상한도액은 개인 또는 단체에서 인격침해를 입힘으로서 발생하는 모든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회사가 담보「B」에 의하여 지급할 최고액이 됩니다.

4. 용어의 정의에 기재된 「광고침해」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폭발, 붕괴 및 지하매설물손해(특정작업) 부담보 특별약관

- 스케줄 -

특정작업의 장소와 내용

부담보위험

(위에 아무것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면 신고란에 기재된 사항을 따릅니다.)

1. 제1장 담보「A」의 면책조항에 다음 사항을 추가합니다.

이 보험은 위의 스케줄에 담보하지 아니하는 위험으로 기재된 「폭발위험」, 「붕괴위험」 또는 「지하매설물 손해위험」으로 발생한 「재물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가. 타인이 귀하를 위하여 수행하는 작업이나,  
나. 「생산물/완성작업위험」에 해당하는 「재물손해」

2. 용어의 정의를 아래와 같이 추가합니다.

「폭발위험」이라 함은 파열 또는 폭발로 발생한 「재물손해」를 말합니다.

폭발위험은 냉. 난방기, 압력을 사용한 파이핑, 휘발유 주유기, 기계나 동력전달장치로 발생하는 재물손해를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붕괴위험」에는 구축물의 물적손해와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른재물에 대한 손해를 포함합니다.

「구축물의 물적손해」라 함은 아래에 기인하여 발생한 건물 및 구축물의 붕괴를 말합니다.

(1) 비탈작업, 굴착, 굴토, 매립, 터널쌓기, 흙쌓기 및 방축작업 또는

(2) 이전, 떠받치기, 지지 건축, 건물이나 구축물의 철거, 구축 또는 빌딩 및 구축물의 구축대의 철거나 재구축

「지하매설물 손해위험」이라 함은 지하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른 재물에 입힌 손해를 말합니다. 「지하매설물 손해」라 함은 비탈작업, 포장, 굴착, 착공, 매립, 흙쌓기 또는 파일을 박기 위하여 기계설비를 사용하는 중에 발생하거나 그로 인하여 지면 및 수면아래에 있는 동력선, 도관, 파이프, 하수관, 탱크, 터널, 및 이와 유사한 물건과 그 부착물에 입힌 손해를 말합니다.

## 폭발, 붕괴 및 지하매설물손해(특정작업제외) 부담보 특별약관

- 스케줄 -

특정작업의 장소와 내용

담보위험

(위에 아무것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면 신고란에 기재된 사항을 따릅니다.)

1. 이 보험은 「폭발위험」, 「붕괴위험」 혹은 「지하매설물 손해위험」으로 발생하는 「재물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가. 타인이 귀하를 위하여 수행하는 작업이나,  
나. 「생산물/완성작업위험」에 해당하는 「재물손해」  
다. 위의 스케줄에 담보하는 위험으로 기재된 작업

2. 용어의 정의를 아래와 같이 추가합니다.

「폭발위험」이라 함은 파열 또는 폭발로 발생한 재물손해를 말합니다.

폭발위험은 냉. 난방기, 압력을 사용한 파이핑, 휘발유 주유기, 기계나 동력전달 장치로 발생하는 재물손해를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붕괴위험」에는 구축물의 물적손해와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른 재물에 대한 손해를 포함합니다.

「구축물 물적손해」라 함은 아래에 기인하여 발생한 건물 및 구축물의 붕괴를 말합니다.

- (1) 비탈작업, 굴착, 굴토, 매립, 터널뚫기, 흙쌓기 및 방축작업 또는
- (2) 이전, 떠받치기, 지지 건축, 건축이나 구축물의 철거, 구축 또는 빌딩 및 구축물의 구축대의 철거나 재구축

「지하매설물 손해위험」이라 함은 지하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른 재물에 입힌 손해를 말합니다.

「지하매설물 손해」라 함은 비탈작업, 포장, 굴착, 착공, 매립, 흙쌓기, 또는 파일을 박기 위하여 기계설비를 사용하는 중에 발생하거나 그로 인하여 지면 및 수면 아래에 있는 동력 선, 도관, 파이프 하수관, 탱크, 터널 및 이와 유사한 물건과 그 부착물에 입힌 손해를 말합니다.

### 보상한도액 변경 특별약관

- 스케줄 -

	보상한도액
일반위험에 대한 보상총액	\$
생산물/완성작업에 대한 보상총액	\$
인격침해/광고침해에 대한 보상한도액	\$
1사고당 보상한도액	\$
화재 손해에 대한 보상한도액	\$
의료비에 대한 보상한도액	\$

(위에 아무것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면 신고란에 기재된 사항을 따릅니다.)

신고란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은 스케줄 또는 이 특별약관에 기재된 사항에 따른 신고란기재의 보상한도액으로 대체됩니다.

## 보험료 조정 특별약관

아래 사항을 추가 합의합니다.

- 가. 보험증권에 첨부된 스케줄에 기재된 생산물위험에 대한 보험료는 최저 예치보험료에 불과하며, 실제보험료는 이 보험증권 만료시에 보험기간중의 실제판매고에 따라 계산합니다. 만일, 이와 같이 계산된 조정보험료가 기납입된 최저예치보험료를 초과하면, 피보험자는 그 초과분을 회사에 추가 납입하여야 합니다.
- 나. 위 조건에 따라 피보험자는 보험증권 만료직후에 보험기간중의 실제 판매고를 관계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서면 통지하여야 합니다.

## 벌과금 부담보 특별약관

이 보험은 벌금, 과료 또는 형벌이나 징계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담보하지 아니합니다.

## 교차배상책임 특별약관

어느 피보험자가 다른 피보험자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게되는 경우 이 보험증권은 각 피보험자에게 별도증권이 발행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배상청구를 받는 피보험자를 담보하는 것으로 합의합니다. 그러나, 복수의 피보험자를 담보한다고해서 보상한도액을 초과하여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보험료 / 이재보상금 지급 특별약관

1. 우리회사는 보험료를 원화로 영수 또는 환급할 때에는 청약일 또는 배서일의 한국외환은행1차고시 대고객 전신환매도율로 환산한 원화로 합니다.
  - ① 보험료: 청약일
  - ② 추가 및 환급보험료: 배서일
  - ③ 해지환급보험료: 해지일
  - ④ 분납보험료: 납입해당일
2. 보험금은 지급일의 한국외환은행 1차고시 대고객 전신환매도율로 환산한 원화 또는 (US\$ 또는 YEN)화에 해당하는 외화증서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3. 자기부담금을 외화로 설정한 경우에는 회사가 보험금 지급일 와환고시 1차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을 적용하여 자기부담금을 산정합니다.

## 기초공제 특별약관

- 스케줄 -

담보내용	기초공제금액과 적용기준
신체장해배상책임	\$ _____ 배상청구당 \$ _____ 사 고 당
재물손해배상책임	\$ _____ 배상청구당 \$ _____ 사 고 당
재물손해배상책임의 구분없이 (단, 주차장배상책임의 경우 \$100.- & 사용자배상책임 및 구내치료비 제외)	\$1,000 _____ 사 고 당

(위의 아무것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면, 신고란에 기재된 사항을 따릅니다.)

특별약관의 적용(특별약관에 적용되는 제한사항을 아래에 기재하십시오. 만약 제한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면 기초공제금액은 모든「신체장해」 및 「재물손해」에 적용됩니다.):

1. 신체장해배상책임 및 재물손해배상책임담보에 대하여 회사는 위 스케줄에 기재된 각 담보별로 적용되는 기초공제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만을 보상하며, 각 담보별 「1사고당」의 보상한도액은 해당 기초공제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됩니다. 그러나 「보상총액」은 기초공제금액에 관계없이 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총액입니다.
2. 스케줄에 기재된 기초공제금액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A. 배상청구기준 - 기초공제금액이 「손해배상 청구」으로 되어 있는 경우 기초공제금액은 다음의 손해에 적용합니다.
    - (1) 신체장해배상책임 및 재물손해배상책임 담보에 있어서는 각각
      - a. 피해자 1인의 「신체장해」에 대한 모든 손해, 또는
      - b. 피해자 1인이나 하나의 단체가 하나의 사고로 입은 「재물손해」에 대한 모든 손해
    - (2) 신체장해배상책임과 재물손해배상책임 담보를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고]로 피해자 1인이나 하나의 단체가 입은 「신체장해」 나 「재물손해」에 대한 모든 손해
  - B. 사고기준 - 기초공제금액이 사고기준으로 되어 있는 경우 이 기초공제금액은 다음의 손해에 적용합니다.
    - (1) 신체장해배상책임과 재물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는 각각 사고로 피해를 입은 개인이나 단체의 수에 관계없이.
      - a. 하나의 사고에 기인된 신체장해에 대한 모든 손해 또는
      - b. 하나의 사고에 기인된 재물손해에 대한 모든 손해
    - (2) 신체장해 배상책임과 재물손해 배상책임 담보를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해를 입은 개인이나 단체의 수에 관계없이 「하나의 사고」에 기인된 모든 「신체장해」 및 「재물손해」



## 대위권포기 특별약관

이 증권과 그의 특별약관에 포함된 제조건, 제면책조항 및 제규정에 관계없이 우리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손해발생시의 피보험자가 소유, 관리 또는 기타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며 이 보험에 가입한 개인이나 회사, 법인체의 경우 이들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 구외선박 배상책임 담보 특별약관

이 보험은 본 증권이나 본 증권에 배서된 보험조건, 면책조항 및 기타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체장해나 재물손해가 피보험자가 소유, 임차, 통제하고 있는 구내밖에서 발생할지라도,

가. 기명피보험자가 소유, 운행, 임차하고 있는 선박이나.

나. 기명피보험자가 고용 하고 있는 피고용인이 운용하는 다른 선박의 소유, 유지, 운행, 사용, 양륙, 양하작업으로 발생하는 신체장해나 재물손해로 인한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을 담보하기로 합니다.

## 보험료 분납 특별약관

1. 이 보험증권은 12개월의 보험기간에 대한 계약으로써 발행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분할 납입할 수 있음을 합의합니다.

(1) 2회 분납

제1회 분납(%)년 월 일 계약체결시 최초 납입

제2회 분납(%)년 월 일 납입

(2) 4회 분납

제1회 분납(%)년 월 일 계약체결시 최초 납입

제2회 분납(%)년 월 일 납입

제3회 분납(%)년 월 일 납입

제4회 분납(%)년 월 일 납입

그러나 이 특별약관은 다음 조항을 추가하여 합의합니다.

매회 분납보험료가 위에 합의된 기일까지 납입되지 아니할 경우, 회사는 소정보험료 납입기일부터 실제로 분납보험료가 납입된때까지 기간중에 발생한 여하한 손해도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2. 이 조항에 의거 납입된 분납보험료를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할 경우, 미분납보험료는 즉시 납입하여야 합니다.

## 가스사고 배상책임부담보 특별약관

우리회사는 손해액에 대한 배상청구가 있을 때 아래에 명시된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의 효력여부에 관계없이 이에 의하여 보상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추가 약정합니다.

보험회사	증권번호	보험기간	보상한도액
			신체장해 \60,000,000 재물손해 \300,000,000

위의 기재된 사항 외에 이 보험증권의 어떠한 약정사항, 조건, 신고사항, 면책조항, 제한조건도 변경, 방기 또는 확장되지 아니합니다.

## 원자력 배상책임부담보 특별약관

이 보험증권은 방사선 동위원소의 사용이외에 피보험자가 원자력시설을 소유하거나 사용 관리중에 위험한 핵물질에 의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정의>

「핵물질」이란 본래의 핵물질, 특수 핵물질, 또는 부산물을 말합니다.

「본래의 핵물질, 특수물질, 부산물」이란 대한민국 원자력법의 정의 또는 이의 수정된 모든 법률에 규정한 의미를 말합니다.

「소모된 연료」는 고체 액체를 불문하고 핵원자로 속에서 방사선으로 사용되었거나 방사선에 노출되어진 연료를 말합니다.

「폐물」이란 (1) 부산물을 포함하며

(2) 하기의 (ㄱ)란 및 (ㄴ)란의 원자력 시설의 정의에 포함된 모든 원자력 시설을 개인이나 기관에 의해 운용될 때 생기는 폐기물을 말합니다.

「방사성 동위원소」는 소모된 연료나 폐물 또는 원자력 시설로부터 방출되거나 소산된 물질을 제외한 부산물을 말합니다.

「원자력 시설」이란 다음을 말합니다.

(ㄱ) 모든 원자로

(ㄴ) 하기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장치나 설비

(1) 동위원소나 우라늄 또는 플루토늄을 분리.

(2) 소모된 연료의 이용이나 가공처리

(3) 폐물의 취급, 가공처리 및 포장

(ㄷ) 특수한 핵물질을 가공 처리하거나, 제조하거나, 혼합하는데 사용 되어지는 장치 및 설비

단, 이러한 장치 및 설비는 이들이 소재하는 구내에서 피보험자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특수한 핵물질의 총량이 플루토늄 25그램이나 우라늄 233 또는 이들의 결합, 그리고 우라늄 233 또는 이들의 결합, 그리고 우라늄 235가 250그램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저장된 것을 말합니다.

(ㄹ) 폐기물의 처분이나 저장을 위해 사용되거나 준비된 장소나 건물 및 구축물, 웅덩이, 굴 그리고 위의 장치나 설비가 소재하고 있는 부지와 이 부지위에서 행해지는 모든 작업, 그리고 이러한 작업에 사용되어지는 모든 건물은 원자력 설비에 포함됩니다.

「원자로」는 자체적인 연쇄반응으로 핵분열을 계속, 유지시키거나, 핵분열 시킬 수 있는 위험한 물질을 저장하는데 사용되거나 고안된 기계 장치를 말합니다.

「위험한 재산」이란 방사성, 독성 또는 폭발성이 있는 물질을 말합니다.

재산의 손실 및 신체장해에 관해서 신체장해나 손실이란 말은 재산의 모든 형태의 방사능오염물 포함합니다.

## 추가 피보험자(명의사용인) 특별약관

- 스케줄 -

명의 사용인 :

(위에 아무것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면 신고란에 기재된 사항을 따릅니다.)

귀하의 명의로 거래를 하는 스케줄에 기재된 권리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한하여 그 권리자는 제2장 피보험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 어린이에 대한 의료비 부담보 특별약관

제1장의 담보「C」의 면책조항에 다음 사항을 추가합니다.

1. 피보험자의 업무에 등록된 어린이

## 회계법인 위험(수탁물 배상책임)부담보 특별약관

이 보험은 귀하가 수탁받은 물건의 소유, 관리, 사용 및 그 수탁물건에 관련된 작업으로 발생하는 「신체장해」, 「재물손해」, 「인격침해」 또는 「광고침해」를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건강증진 또는 미용행위 부담보 특별약관

- 스케줄 -

### 업무내용

(위에 아무것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면, 신고란에 기재된 사항을 따릅니다.)  
제1장의 담보 A 및 B 에 다음사항을 면책조항으로 추가합니다.

1. 아래 업무수행상의 부주의
  - a. 의료, 외과, 치과, 엑스선, 간호, 처치 또는 이에 관련된 음식물 제공
  - b. 건강증진 또는 그 처치행위
  - c. 미용행위
2. 투약, 혹은 의료, 치과 혹은 외과기구 공급
3. 사체취급, 검시, 신체기관의 기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기사, 설계사 또는 측량사 전문직업 배상책임 부담보 특별약관

이 보험은 아래의 전문직업위험을 포함하여 귀하가 귀하를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전문직업으로 발생하는 「신체장해」, 「재물손해」, 「인격침해」 또는 「광고침해」를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지도, 도면, 의견서, 보고서, 측량, 변경요구서, 설계서 혹은 설계명세서
2. 감독, 검사 또는 기술용역제품

## 의료비 부담보 특별약관

- 스케줄 -

구내의 명세와 장소

(위에 아무것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면, 신고란에 기재된 사항을 따릅니다.)

위의 스케줄에 기재된 장소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이 보험증권의 제 1 장 담보 C의 의료비를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1장의 추가지급조항에 다음 사항을 추가합니다.

8. 이 보험으로 보상하는 신체장해사고에 대한 응급처치 비용

## 특정 생산물 부담보 특별약관

- 스케줄 -

특정생산물 내용:

(위의 기재란에 생산물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면, 신고란에 기재된 사항을 따릅니다.)

이 보험은 스케줄에 기재된 특정생산물의 「생산물/완성작업 위험」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특정 작업 부당보 특별약관

- 스케줄 -

특정생산물 내용

(위에 아무것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면 신고란에 기재된 사항을 따릅니다.)

이 보험은 스케줄에 기재된 특정 작업으로 발생하는「신체장해」, 「재물손해」, 「인격침해」 또는 「광고침해」를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특정 구내 또는 사업만의 담보 특별약관

- 스케줄 -

특정구내:

특정사업:

(위에 아무것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신고란에 기재된 사항을 따릅니다.)

이 보험은 아래에 기재된 사고로 발생한 「신체장해」, 「재물손해」, 「인격침해」, 「광고침해」 및 의료비만을 보상합니다.

1. 스케줄에 기재된 구내의 소유, 관리, 사용 및 그 구내의 소유, 관리, 사용에 필수적이거나 부수적인 업무
2. 스케줄에 기재된 사업

## 특정구내의 전위험 부담보 특별약관

- 스케줄 -

특정구내의 장소와 내용:

(위에 아무것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면 신고란에 기재된 사항을 따릅니다.)

이 보험은 아래에 기인된 「신체장해」, 「재물손해」, 「인격침해」 또는 「광고침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스케줄에 기재된 구내와 그 구내에 있는 시설의 소유, 관리, 사용
2. 그 구내에서의 모든 업무와 그 구내의 소유, 유지, 사용에 필수적이거나 부수적인 구내외의 모든 업무
3. 그 구내에서 제조, 분배되는 모든 제품

## 운동경기 참가자 부담보 특별약관

- 스케줄 -

업무내용:

(위에 아무것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면 신고란에 기재된 사항을 따릅니다.)

위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 보험은 귀하가 후원하는 운동경기에 기인된 「신체장해」, 및 「재물손해」  
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건물 또는 시설물 이동위험 부담보 특별약관

이 보험은 귀하가 「자동차」 또는 「이동장비」로 건물이나 시설물을 이동하는 중에 발생하는 「신체장해」, 「재물손해」, 「인격침해」 또는 「광고침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이동기간이라 함은 건물이나 시설물을 본래의 자리에서 옮길 때 시작하여 건물이나 시설물을 옮겨 놓기 위하여 차량에서 하역하는 순간에 끝납니다.

## 화재배상책임 부담보 특별약관

1. 이 보험은 제1장 담보 A 의 2. 면책조항의 마지막 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이 보험은 제3장 보상한도액의 제6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3. 신고란에 기재된 「화재배상책임」은 이 보험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수탁물건 부당보 특별약관

업무내용

경비회사

창고 - 냉동창고

창고 - 소형창고

위의 스케줄에 기재된 내용의 업무에 관하여 이 보험은 귀하가

1. 보관의 목적으로 수탁받거나
2. 소유·임차한 구내에 있는 타인의 재물에 입힌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검사, 감정 및 측량위험 부담보 특별약관

이 보험은 손해배상청구, 조사, 조정, 기술용역, 검사, 감정, 측량 또는 회계업무로 발생하는 「신체장해」, 「재물손해」, 「인격침해」 또는 「광고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시험검사 또는 자문위험 부담보 특별약관

제1장 담보「A」 및 담보「B」에 다음사항을 면책조항으로 추가합니다.

이 보험은 아래에 기인된 「신체장해」, 「재물손해」, 「인격침해」 또는 「광고침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시험검사, 가치평가, 자문이나 권고의 실수나 결함
2. 시험검사, 가치평가, 자문이나 권고사항에 대하여 구두나 서면에 의한 보고

## 공사관리 부주의 부담보 특별약관

제1장의 담보「A」 및 담보「B」에 다음사항을 면책조항으로 추가합니다.

이 보험은 아래에 사유로 발생한 「신체장해」, 「재물손해」, 「인경침해」 또는 「광고침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귀하가 공사관리를 담당하는 사업에 관하여 설계사, 기사, 측량사가지도, 도면, 의견서, 보고서, 측량, 변경요구서, 설계서, 설계명세서를 작성, 승인, 작성상의 부주의
2. 귀하가 공사관리를 담당하는 사업에 관하여 귀하나 귀하를 위하여 수행하는 검사, 감독, 품질관리 또는 기술용역 제공

그러나, 귀하, 귀하의 근로자 또는 귀하의 하도급업자가 수행하는 건설공사나 철거공사로 발생하는 「신체장해」 나 「재물손해」는 보상합니다.

## 특수건물소유자 배상책임 부담보 특별약관

이 보험은 사고발생일자나 손해배상청구 일자에 아래에 명시된 신체배상책임특약부 화재보험의 효력여부에 관계없이 이에 의하여 보상받는 신체장해에 대한 보상책임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기초보험 명세)

보 험 회 사	증 권 번 호	보 험 기 간	보 상 한 도 액

## 고용주 배상책임보험 특별약관

1. (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는 이 증권 또는 이에 첨부된 특별약관의 모든 조건에도 불구하고, 기명 피보험자가 근로자를 고용하는데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상해, 직업병 및 이로 인한 사망으로 부담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담보합니다.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이 특약은 다음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1) 피보험자나 피보험자의 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이와 유사한 법률상 부담하는 책임
  - (2)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나 법령위반(고의 또는 중과실로 법령을 위반하고 법령위반사실과 보험사고간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으로 생긴 손해
  - (3) 근로자의 고의 또는 범죄행위로 생긴 손해. 그러나, 그 근로자에게 생긴 손해에 한합니다.
  - (4) 피보험자의 하도급업자의 근로자에게 생긴 손해, 그러나, 당해 근로자가 보험에 가입되었을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5) 자업장내에서의 간이치료비
  - (6)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지진, 분호, 해일 또는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 (7)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해서 오염된 물질 (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
  - (8) 위 (7)이외의 방사선조사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생긴 손해
  - (9) 피보험자가 근로자와의 사이에 손해배상 또는 재해보상에 대한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다른 가중된 배상책임
  - (10)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이와 유사한 법률에 의하여 보상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업무상 재해에 대한 피보험자의 배상책임
  - (11)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이와 유사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급부를 행한 보험자가 구상권의 행사 또는 비용의 청구를 함에 따라 부담하게된 배상책임
  - (12) 피보험자의 동거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 (13)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를 받음으로써 부담하게 된 배상책임

## 오염사고배상책임 확장담보 특별약관(II)

제1장 담보「A」의 면책조항 바.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주차장 특별약관

1. (사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우리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보상할 영업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1.의 사고라 함은 아래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주차시설(이하 "시설"이라 합니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주차업무 (이하 "업무"라 합니다)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말합니다.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4) 원자핵물질(원자핵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과 원자핵분열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방사선조사(照射) 또는 방사능오염 기타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5)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 (6)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 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 (7)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피보험시설내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로 생긴 재물손해 및 주차 목적으로 수탁받은 고객의 차량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 (8)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9) 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 (10)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피보험자가 주차의 목적으로 수탁받은 차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 (11) 피보험자가 양도한 시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시설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12) 피보험자의 채무불이행이나 이행지체 또는 피보험자의 생산물이나 공사물건이 피보험자가 보증한 성능, 품질적합성 또는 내구성의 결함으로 생긴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아니한 유체물의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 (13) 피보험자의 시설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음식물이나 재물 또는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나고 시설밖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그러한 음식물이나 재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14) 공사의 종료(공사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 또는 폐기후 공사의 결과로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공사물건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15) 의사(한의사 및 수의사를 포함합니다), 간호사, 약사, 건축사, 설계사, 측량사, 이용사, 미용사, 안마사, 침술사("뜸"을 포함합니다), 접골사 등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16) 가입여부를 불문하고 의무보험인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또는 화재보험의

신체손해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17) 지하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손해를 입은 지하매설물로 생긴 다른 재물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18) 티끌, 먼지,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19) 이륜자동차의 도난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20)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또는 일부 부분품, 부속품이나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그러나, 화재, 도난 또는 타이어 이외의 부분과 함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21) 자연마모, 결빙, 기계적 고장이나 전기적 고장으로 차량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22) 차량에 부착한 고정설비가 아닌 차량내에 놓아둔 물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23) 정부, 공공기관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몰수, 국유화 또는 징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24) 주차장 내에서 자동차 또는 중기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의 차량조작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25) 차량의 수리작업(차량부품의 수리, 대체작업을 포함합니다)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26) 차량의 사용손실 등 일체의 간접손해
  - (27)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구분	내용
시설명세	상호 (성명): 구 조: 면 적: (옥내: 옥외: ) 권리관계(소유, 임차, 관리등의 구별): 주차 대수: 관리인여부:
업무내용	

## 서기 2000년 부담보 추가약관

- ① 우리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제조건, 제규정에 불구하고, 피보험자의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컴퓨터, 자료처리기기, 마이크로칩, 운영체제, 마이크로프로세서, 집적회로 및 이와 유사한 장치, 컴퓨터 소프트웨어 또는 이들을 사용하거나 이들과 관련된 생산물, 서비스, 자료, 기능에 있어 어떤 날짜를 정확한 달력날짜로 인식, 처리, 구별, 해석 혹은 받아들일 수 없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직접 또는 간접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② 회사는 위와 관련한 결함, 논리체계등을 교정하기 위한 정보처리시스템(EDPS) 또는 그 관련기기 일부분을 수리하거나 수정하는 비용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③ 회사는 상기 ①에 기술한 것과 같은 날짜와 관련된 잠재적인 또는 실제적인 고장, 오작동, 부적합 등을 확인, 수정, 시험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행하였거나 타인으로부터 받은 어떠한 조언, 지도, 설계의 평가, 설치의 검사, 유지관리, 수리 또는 감독상의 오류, 부적절, 오작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와 결과적 손실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④ 상기 ①, ②, ③에 기술한 손해 또는 결과적 손실은 다른 사고원인과 병합 또는 관련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테러행위면책특별약관

본 특별조항은 보통약관 및 여타의 특별약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정합니다.

### 테러행위 면책

보험회사는 실제 또는 발생이 예견되는 테러사고를 저지 또는 방어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테러행위로 인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동시적 또는 연속적으로 테러행위로 귀결되는 여타의 원인 또는 행위와 상관없이 그 손해액은 면책됩니다.

테러행위란 개인, 집단 또는 재물에 가해지는 아래의 행위를 지칭합니다.

#### 1. 아래의 행위 또는 그 행위의 사전준비와 관련된 행위

- 가. 물리력 또는 폭력의 사용 또는 위협, 또는
- 나. 위태로운 행위의 위협 또는 의뢰
- 다. 전자, 통신, 정보 또는 공학적 시스템을 간섭 또는 차단하는 행위의 수행 또는 의뢰

#### 2. 아래중 하나 또는 양자가 적용될 때,

- 가. 정부나 민간인 또는 그 중의 일부를 협박하거나 위협 또는 경제의 일부를 혼란 시키고자 하는 의도
- 나. 정치적, 이념적, 종교적, 사회적 또는 경제적 목적 또는 이론이나 이념을(또는 그 이론이나 이념에 반대를) 표현할 목적으로 정부를 위협하거나 협박하려는 의도가 있을 경우

상기 1항 또는 2항 이외에 본 특별약관은 아래의 테러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핵반응, 방사능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귀결되는 핵물질의 사용, 방출 또는 유출과 관련된 행위
- 2. 병원균이나 독성의 생화학 물질을 살포 또는 사용하는 행위
- 3. 병원균이나 독성의 생화학 물질 살포할 경우, 테러행위의 목적이 그러한 물질의 살포일 것

※ 단, 상기에도 불구하고 이 면책약관은 상해손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손해사정협조 조항(ACE)

여타의 반대조항에도 불구하고 본 재보험은 다음의 사항을 선행조건으로 합니다.

- 1. 원수사는 본 재보험에 대하여 배상청구로 이어질 정황을 인지하였을 때 이에 관하여 재보험자들에게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 2. 원수사는 재보험자들에게 배상청구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그러한 배상청구의 조정 및 합의를 함에 있어 재보험자들과 협력해야 합니다.
- 3. 재보험자들의 사전승인없이 어떠한 합의, 절충안 또는 책임도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기타 조건은 변동없습니다.

## 손해사정협조 조항(KoreanRE)

여타의 반대조항에도 불구하고 본 재보험은 다음의 사항을 조건으로 합니다.

1. 원수사는 본 재보험에 대하여 배상청구로 이어질 정황을 인지하였을 때 이에 관하여 재보험자에게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2. 원수사는 재보험자에게 배상청구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합니다.
3. 리딩재보험자는 그들을 대신하여 그러한 배상청구와 관련된 협상, 조정, 합의를 총괄하는 손해사정사 및 대표자를 지정할 권한을 가집니다.
4. 리딩 재보험자의 선동의 없이 어떠한 합의, 절충안 또는 책임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모든 특혜지급은 그 금액과 상관없이 재보험자의 동의를 구하기 위하여 재보험자에게 회부되어야 합니다.

## 테러 부담보 조항

여타의 반대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보험은 직간접적으로 여타의 요인 또는 사건에 수반되거나 일련하여 발생하는지 여부를 불문하여 테러행위로부터 비롯되거나, 초래되거나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해, 비용을 담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약정합니다.

본 조항에서의 테러행위란 한 개인 또는 집단에 의한 물리력, 폭력 또는 그러한 행위에 대한 위협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행위는 정부나 대중, 또는 대중의 일부에게 공포를 가하기 위한 정치적, 종교적, 이념적 또는 유사한 목적으로 독단으로 수행되거나 단체 또는 정부의 이익을 위하거나 관련되어 행하여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 조항은 테러행위와 관련된 통제, 예방, 진압 또는 기타의 조치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거나 비롯되거나 초래된 손해 및 비용 또한 담보하지 아니합니다.

보험자가 본 조항에 면책조항에 의거하여 손해 또는 비용에 대하여 담보하지 아니할 경우 부책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보험자가 부담합니다.

본 조항의 일부가 무효 또는 유효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도 여타의 부분은 여전히 효력과 영향력을 가집니다.

## 전쟁 부담보 특별약관

이 보험에는 다음의 사항이 적용됩니다.

전쟁, 침략, 외국의 행위, 적대행위 또는 전쟁유사행위(선전포고 여부를 불문합니다.), 내란, 반란, 혁명, 대중적인 반란의 수준(가담자의 비율 또는 수의 측면에서)에 달하는 폭동, 군사 또는 정권찬탈, 법적으로 권한을 가진 권력기관에 의한 계엄령, 폭동 단속령과 직간접적으로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담보하지 아니합니다. 이 보험하에서의 손해나 법률적 배상책임을 다루는 모든 소송, 법적조치, 또는 소송이나 배상청구를 집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그러한 손해나 법률적 배상책임을 동 면책조항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데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보험자에게 있습니다.

## 테러행위 면책 특별약관

보험회사는 실제 또는 발생이 예견되는 테러사고를 저지 또는 방어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테러행위로 인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동시적 또는 연속적으로 테러행위로 귀결되는 여타의 원인 또는 행위와 상관없이 그 손해액은 면책됩니다.

테러행위란 개인, 집단 또는 재물에 가해지는 아래의 행위를 지칭합니다.

1. 아래의 행위 또는 그 행위의 사전준비와 관련된 행위

가. 물리력 또는 폭력의 사용 또는 위협, 또는

나. 위태로운 행위의 위협 또는 의뢰

다. 전자, 통신, 정보 또는 공학적 시스템을 간섭 또는 차단하는 행위의 수행 또는 의뢰

2. 아래 중 하나 또는 양자가 적용될 때,

가. 정부나 민간인 또는 그 중의 일부를 협박하거나 위협 또는 경제의 일부를 혼란 시키고자 하는 의도

나. 정치적, 이념적, 종교적, 사회적 또는 경제적 목적 또는 이론이나 이념을(또는 그 이론이나 이념에 반대를) 표현할 목적으로 정부를 위협하거나 협박하려는 의도가 있을 경우

상기 1항 또는 2항 이외에 본 특별약관은 아래의 테러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핵반응, 방사능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귀결되는 핵물질의 사용, 방출 또는 유출과 관련된 행위

2. 병원균이나 독성의 생화학 물질을 살포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병원균이나 독성의 생화학 물질 살포할 경우, 테러행위의 목적이 그러한 물질의 살포일 것

\* 상기사항에도 불구하고 동 면책사항은 우연한 사고로 인한 신체상해사고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모든 비용의 보상한도액 내 포함

이 보험에서 담보하는 모든 비용은 스케줄에 명시된 보상한도액내에 포함됩니다.

## 품질저하 부담보 특별약관

생산물(또는 그 일부)이 명시, 수행 또는 설계, 보장, 보증된 보낼의 목적을 수행하지 못함으로부터 비롯되는 배상책임은 담보하지 않습니다.

## 석면 부담보 특별약관

일체의 석면위험 부담보 특별약관

이 계약은 그 형태와 양에 관련없이 직간접을 불문하여 석면으로부터 비롯되거나 초래되거나 또는 그러한 것으로 주장되는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담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약정합니다.

## 계약상 가중책임 부담보 특별약관

회사는 피보험자의 타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증가한 손해에 대하여는 담보하지 아니합니다.

## 화재배상 담보 특별약관

회사는 귀하가 임차한 공간의 화재로 인한 재물손해에 대하여 발생하게 되는 법률적 배상책임을 부담함에 합의합니다.

이 특별약관의 별도의 보상 한도액은 본 보험의 보상한도액에 명기된 바에 따라 적용합니다.

기타 모든 보험조건은 변경하지 않습니다.

## 물적손해확장담보 특별약관(수탁자 배상책임 담보 특별약관)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해 피보험자가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피보험자가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하여 발생하게 되는 법률적 배상책임을 부담함에 합의합니다.

회사는 아래의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금, 은, 보석류, 화폐, 유가증권, 수입인지, 모피류, 서화류, 골동품, 주류, 담배, 유리 제품, 도자기, 화장품, 의약품 및 가축류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 피보험자가 업무수행상 고객의 물건을 보관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 중 우연한 사고로 고객소유의 금, 은, 보석류, 시계, 모피류, 의류, 도자기, 화장품 등이 손상, 파손 또는 멸실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합니다.
2. 재물의 하자, 자연소모 또는 (재물 자체의) 성질로 인한 발화, 폭발, 땀, 곰팡이, 부패, 변색, 향기의 변질, 녹과 기타 이와 유사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사용손실 등 모든 간접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나 그 근로자 또는 그 가족, 친족, 동거인, 하숙인 또는 감수인이 행하거나 가담한 절도나 강도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국가나 공공기관에 의한 재물의 징발, 몰수, 압류, 압수 또는 국유화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재물의 가공 중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인도 또는 배달착오, 절도, 절취 또는 감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급/배수관, 냉/난방장치, 습도조절장치, 소화전, 업무용기구, 가사용 기구 및 스프링클러로부터 발생한 증기, 물 또는 내용물의 누출 혹은 일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결함이 있는 지붕, 문, 창, 통풍장치 등에서 새어 든 비 또는 눈 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도 발생하였을 것으로 피보험자가 입증한 손해는 보상합니다.
10. 재물이 위탁자에게 인도된 후에 발견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냉동, 냉장장치 또는 설비의 고장이나 전기공급의 중단에 의한 온도변화로 냉동, 냉장재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소유 또는 사용하는 물건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3. 피보험자가 점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중지 및 점검 조항

전 보험기간에도 불구하고, 이 증권은 초기 ( ) 동안만을 위해 발행됩니다. 점검일자에 보험자는 아래 조건에 따라 12개월에 대해 갱신함을 동의합니다.

1. 보험자는 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정보를 제출하도록 점검일로부터 45일 이전에 피보험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보험자는 필요하다면 향후 12개월에 대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a) 갱신을 거절할 만한 중요한 위험의 변경이 있거나
  - b) ( )% 이상의 exposure의 증가가 있거나
  - c) ( ) 보다 큰 발생, 추산 또는 지급 손해가 있는 경우

이 보험은 12개월의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법률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보험자의 선택에 의해 30일 전 통지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보험자는 미경과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한 보험료에서 장기계약 할인액을 제외한 금액을 환급하여야 합니다.

## 주차대행서비스 특별약관

### 제1조(사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회사가 보상할 보통약관 제5조(보상하는 손해)의 사고라 함은 아래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주차시설(이하 시설이라 합니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주차업무(이하 업무라 합니다)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말합니다.

###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6.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7.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주차목적으로 수탁받은 고객의 차량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8.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 입은 신체장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9. 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배상책임.
10.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피보험자가 대리주차의 목적으로 수탁받은 차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1. 피보험자가 양도한 시설로 생긴 배상책임과 시설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아래의 사유로 생긴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아니한 유체물의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가. 피보험자의 채무불이행이나 이행지체  
나. 피보험자의 생산물이나 공사물건이 피보험자가 보증한 성능, 품질적합성 또는 내구성의 결함
13.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그러한 음식물이나 재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가. 피보험자의 시설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음식물이나 재물  
나.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나고 시설밖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
14. 공사의 종료(공사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 또는 폐기 후 공사의 결과로 부담하는 배상책임 및 공사물건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5. 의사(한의사 및 수의사를 포함합니다), 간호사, 약사, 건축사, 설계사, 측량사, 이용사, 미용사, 안마사, 침술사(뜸을 포함합니다), 접골사등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6. 가입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가스배상책임보험, 화재배상책임보험 등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를 포함합니다. 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7. 지하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손해를 입은 지하매설물로 생긴 다른 재물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9. 타이어, 튜브, 부속품이나 부속기계장치, 네비게이션 등 자동차의 부분품 및 자동차의 도난 또는 절도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0. 자연마모, 결빙, 기계적 고장이나 전기적 고장으로 차량에 발생한 손해 배상책임
21. 차량에 부착한 고정설비가 아닌 차량내에 놓아둔 물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2. 정부, 공공기관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몰수, 국유화 또는 징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3.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 또는 마약중독, 음주상태인 사람의 차량 조작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4. 차량의 수리작업(차량부품의 수리, 대체작업을 포함합니다)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5. 차량의 사용손실 등 일체의 간접손해 및 피해 (단, 동급수준의 차량 렌트비용은 보상합니다. 그러나 수탁차량의 렌트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26.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7. 수탁지점, 주차지점, 그리고 양지점간 경로를 벗어난 지역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8. 수탁지점(서비스지점)과 주차지점간에 주차거리 2,000미터를 초과하는 지역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9. 주차대행 기사에 대한 손해
30. 인접한 공도, 갓길, 인도주차와 같은 불법주차에 기인한 손해. 단, 적법한 우선주차지역은 제외함.

### 제3조(정의규정)

1. "주차대행서비스"이란 제3의 주차대행서비스업체에 의해 제공되는 대리주차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이 보험에서의 주차대행서비스는 시설소유자가 무료로 제공하는 주차대행서비스는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2. "자동차"란 공공도로를 운행하기 위한 육상운송차량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트레일러, 세미트레일러, 운송장비와 같은 운송기계류는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3. "주차대행서비스"에 대한 보장범위는 수탁지점, 주차지점, 그리고 양지점간의 경로를 포함합니다.

###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구분	내용
시설명세	상호(성명): 주소: 수탁지점 주소 및 주차지점 주소 수탁지점과 주차지점간 거리 주차대행 기사수: 주차대행 빈도 (일평균 주차대수):
업무내용	

## 렌트비용담보 추가특별약관 (Rent-a-Car Expenses Clause)

###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Valet Parking Service Liability Endorsement'-보상하지 않은 손해 25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기재된 손해를 보상합니다.

#### 1. 가입대상

이 추가특별약관은 'Valet Parking Service Liability Endorsement' 가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 추가특별약관에 의하여 「수탁차량손해」를 이 추가특별약관으로 대체하여 적용합니다.

직접손해

#### 2. 정의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회사가 보상할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주차대행서비스'업무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수탁차량의 사고를 말합니다.

수탁차량: 피보험자가 '주차대행서비스' 업무 수행으로 맡게 되는 다른 사람의 자동차 렌트비용담보

#### 3. 보상하는 손해

(1) 회사는 이 추가특별약관의 '직접손해'에 의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렌트비용 보험금'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2) 회사가 지급하는 '렌트비용 보험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인정기준액

가. 대차를 하는 경우

(ㄱ) 대여자동차로 대체사용할 수 있는 차종에 대하여는 차량만을 대여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 동종의 대여자동차를 대여하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 다만, 보험회사는 피해자의 선택에 따라 동종의 자동차를 직접 제공할 수 있으며 동종의 대여자동차를 구할 수 없는 희소차량에 대해서는 동급의 일반적인 차량을 제공할 수 있음

(ㄴ) 대여자동차로 대체사용할 수 없는 차종에 대하여는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차종(사업용 해당차종의 구분이 곤란할 때에는 사용방법이 유사한 차종으로 함. 이하 같음) 휴차료 일람표 범위내에서 실임차료

##### ② 인정기간

가.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 )일을 한도로 함

나. 수리 불가능한 경우: ( )일

##### ③ 기간공제: ( )일

#### 4. 피보험자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입니다.

#### 5.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회사는 기명피보험자나 보험증권 또는 운전자 명세서에 기재된 범위내의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수탁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때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 회사는 영문영업배상책임보험(Commercial General Liability)에서 보상하지 않은 손해와 Valet Parking Service Liability Endorsement에서 보상하지 않은 손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6.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 치아손해 부당보 특별약관

이 보험은 치아 손상에 대한 배상책임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 상품 다수구매자 특별약관

### 제1조(적용범위)

- ① 이 특약은 상품의 '다수구매자(이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 ② 구매자는 보험계약자에 의해 제공된 재화 및 서비스를 구매하는 사람(또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 ③ 보험계약자는 자기의 관리, 운영, 유지하에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또한 보험계약자는 구매자를 위하여 행동하며, 보험계약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 ④ 총 피보험자수는 100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제2조(개별적용)

이 특별약관이 첨부된 경우, 각각의 피보험자별로 별도의 보험계약이 각각 체결된 것으로 간주되며, 이 보험의 조건은 피보험자 개별적으로 적용됩니다.

### 제3조(피보험자의 추가, 일부 해지 또는 교체)

피보험자의 추가, 해지 또는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변경사항에 대해서 월별로 보험회사에 서면 통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보험의 계약기간은 1년이나, 각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구매일자에 따라 달라지며, 이 기간은 최장 3년으로 한정됩니다.

### 제4조(보험료 납입의 특례)

보험계약자는 아래와 같이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① 매 월 첫날부터 말일까지의 변동사항에 대하여, 추가보험료는 익월 ( )일까지 회사에 납입되어야 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추가된 날 이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제5조(보험증권의 발급)

- ① 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만 보험증권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주요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② 피보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개별 피보험자에게는 가입증명서를 발급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조건들은 이 특별약관의 조항들과 상충되지 않는 한 증권 상의 보통약관을 따른다.

상기 담보는 동일한 보험이 있을 경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 제공됨  
상기 일반조항에 따른 담보에 앞서 이 증권의 관련 각 부분별 특정조건을 우선 적용합니다.

## 오염배상책임 부담보 특별약관

제1장 담보「A」의 면책조항「바」의 (1)과 관련하여, 이 보험은 오염으로 인한 어떠한 배상책임도 담보하지 않습니다. 이 특별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증권조건에 따릅니다

## 제재위반 부당보 특별약관

보험회사는 아래의 제재에 반하는 위험의 보장, 보험금의 지급 또는 이익의 제공을 하지  
아니합니다.

- ① UN 결의에 의한 제재, 금지, 제한사항
- ② EU, 영국 또는 미국의 무역·경제적 제재조치 또는 법률규정

## 퀵서비스 배상책임 특별약관

### 제1조(사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회사가 보상할 사고라 함은 아래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퀵서비스 경영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자기의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또는 대리를 의뢰 받은 수탁화물에 대하여 화주로부터 수탁 받은 시점으로부터 수하인에게 인도하기까지의 전체 운송과정 중에 생긴 우연한 사고를 말합니다

### 제2조(보상하는 손해)

① 수탁화물 가액 내에서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②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1. 피보험자가 잔존물의 수송비용, 피해복구비용, 손해방지의 방법을 조사하여 구하기위한 비용. 그러나 피보험자가 손해방지의 방법을 조사하여 배상책임이 없음이 판명된 때에는 지급에 관하여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은 비용만 보상하여 드립니다.
2. 피보험자가 손해방지의무의 절차를 취하는데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3. 피보험자가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4. 증권상 보상한도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5.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을 위해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

### 제3조(제외 수탁화물)

아래와 같이 경제적 가치산정이 객관적으로 어려운 화물이나 특정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화물은 이 계약에 있어서의 수탁화물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1. 원고, 설계서, 모형, 증서, 서류, 사진, 편지 및 이와 비슷한 화물, 미술품이나 골동품
2. 귀금속류, 화폐, 어음, 수표, 채권, 유가증권류, 인지
3. 시계, 담배, 모피류
4. 유리제품
5. 조란류
6. 살아있는 동물

### 제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5.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제5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照射)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7.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9. 수탁화물의 하자, 자연소모 또는 성질로 인한 발화, 폭발, 뜸, 곰팡이, 부패, 변색, 향기의 변질, 녹과 기타 이와 유사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피보험자의 대리인이나 근로자 또는 그의 가족, 친족이 행하거나 가담한 도난이나 강도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차량의 덮개(차량에 부착된 덮개를 포함합니다) 또는 화물의 포장불완전으로 생긴 손해 및 운송 차량의 충돌이 수반되지 아니한 경우 수탁화물간의 충돌, 접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2조(운행상의 안전기준)의 적재중량과 적재용량 기준을 초과하여 적재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다만,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에 의해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때와 피보험자가 사고의 원인이 초과적재가 아님을 입증할 때에는 실제 적재중량에 대한 적재중량 또는 적재용량에 대한 적재용량의 비율로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13. 운송 차량의 충돌이 수반되지 아니한 경우 냉동냉장 장치 또는 설비의 고장이나 전기 공급의 중단에 의한 온도변화로 수탁화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4. 국가나 공공기관에 의한 수탁화물의 징발, 몰수, 압류, 파괴 또는 국유화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5. 분실, 감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6. 기계류, 전자기기류 또는 이와 유사한 재물의 해체 또는 설치 중에 생긴 손해
17. 수탁물이 수하인에게 인도된 후 14일을 초과하여 발견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8. 이사화물과 관련한 배상책임
19. 피보험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창고(모든 보관시설을 포함합니다)에 보관 중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제5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 ① 회사가 보상하는 손해배상금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내에서 인도할 날의 도착지에서의 수탁화물의 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그러나 수탁화물이 보세화물인 경우에는 수출화물에 대하여는 송품장에 기재된 본선 인도가격을, 수입화물에 대하여는 수입면장(수입면장이 없는 경우에는 송품장)에 기재된 운임, 보험료 포함가격을 한도로 합니다.
- ② 회사는 1회의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이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분을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합니다.
- ③ 회사는 손해배상청구금액이 증권 상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소송비용의 인지대, 변호사 비용 등의 비용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비용만 보상합니다.
- ④ 회사는 제2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1목의 비용에 관하여 15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 제6조(용어의 정의)

#### 운송기간

운송기간이라 함은 화주로부터 수탁 받은 시점에서 수하인에게 인도하기까지의 전체 운송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 **유리제품**

유리제품이라 함은 다음과 같은 제품을 말합니다.

- ① 유리, 도자기 또는 사기로 만들어진 제품
- ② 유리, 도자기 또는 사기로 만들어진 용기와 그 수용물
- ③ 유리, 도자기 또는 사기로 만들어진 부품 및 그 부품이 제품원가의 50%를 초과하는 완제품

## **제품 도난 및 분실**

도난이라 함은 피보험자에 의해 명백히 제3자의 침입이 입증된 경우로서 도난신고가 경찰서에 접수된 경우이며 그 이외의 물건의 망실(忘失)은 분실(紛失)로 간주합니다.

## 퀵송서비스 배상책임 특별약관

### 제1조(사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회사가 보상할 사고라 함은 아래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퀵서비스 경영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자기의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 받은 수탁화물에 대하여 화주로부터 수탁 받은 시점으로부터 수하인에게 인도하기까지의 전체 운송과정 중에 생긴 우연한 사고를 말합니다

### 제2조(보상하는 손해)

① 수탁화물 가액 내에서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②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1. 피보험자가 잔존물의 수송비용, 피해복구비용, 손해방지의 방법을 조사하여 구하기 위한 비용. 그러나 피보험자가 손해방지의 방법을 조사하여 배상책임이 없음이 판명된 때에는 지급에 관하여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은 비용만 보상하여 드립니다.
2. 피보험자가 손해방지의무의 절차를 취하는데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3. 피보험자가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 에 관한 비용
4. 증권상 보상한도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5.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을 위해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

### 제3조(제외 수탁화물)

아래와 같이 경제적 가치산정이 객관적으로 어려운 화물이나 특정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화물은 이 계약에 있어서의 수탁화물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1. 원고, 설계서, 모형, 증서, 서류, 사진, 편지 및 이와 비슷한 화물, 미술품이나 골동품
2. 귀금속류, 화폐, 어음, 수표, 채권, 유가증권류, 인지
3. 시계, 담배, 모피류
4. 유리제품
5. 계란류
6. 살아있는 동물

### 제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5.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제5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照射)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7.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9. 수탁화물의 하자, 자연소모 또는 성질로 인한 발화, 폭발, 뜸, 곰팡이, 부패, 변색, 향기의 변질, 녹과 기타 이와 유사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피보험자의 대리인이나 근로자 또는 그의 가족, 친족이 행하거나 가담한 도난이나 강도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차량의 덮개(차량에 부착된 덮개를 포함합니다) 또는 화물의 포장불완전으로 생긴 손해 및 운송 차량의 충돌이 수반되지 아니한 경우 수탁화물간의 충돌, 접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2조(운행상의 안전기준)의 적재중량과 적재용량 기준을 초과하여 적재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다만, 도로교통법 제39조 (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에 의해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때와 피보험자가 사고의 원인이 초과적재가 아님을 입증할 때에는 실제 적재중량에 대한 적재중량 또는 적재용량에 대한 적재용량의 비율로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13. 운송 차량의 충돌이 수반되지 아니한 경우 냉동냉장 장치 또는 설비의 고장이나 전기 공급의 중단에 의한 온도변화로 수탁화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4. 국가나 공공기관에 의한 수탁화물의 징발, 몰수, 압류, 파괴 또는 국유화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5. 분실, 감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6. 기계류, 전자기기류 또는 이와 유사한 재물의 해체 또는 설치 중에 생긴 손해
17. 수탁물이 수하인에게 인도된 후 14일을 초과하여 발견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8. 이사화물과 관련한 배상책임
19. 피보험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창고(모든 보관시설을 포함합니다)에 보관 중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제5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 ① 회사가 보상하는 손해배상금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내에서 인도할 날의 도착지에서 수탁화물의 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그러나 수탁화물이 보세화물인 경우에는 수출화물에 대하여는 송품장에 기재된 본선 인도가격을, 수입화물에 대하여는 수입면장(수입면장이 없는 경우에는 송품장)에 기재된 운임, 보험료 포함가격을 한도로 합니다.
- ② 회사는 1회의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이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분을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합니다.
- ③ 회사는 손해배상청구금액이 증권 상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소송비용의 인지대, 변호사 비용 등의 비용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비용만 보상합니다.
- ④ 회사는 제2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1목의 비용에 관하여 15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 제6조(용어의 정의)

#### ● 운송기간

운송기간이라 함은 화주로부터 수탁 받은 시점에서 수하인에게 인도하기까지의 전체 운송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 유리제품

유리제품이라 함은 다음과 같은 제품을 말합니다.

- ① 유리, 도자기 또는 사기로 만들어진 제품
- ② 유리, 도자기 또는 사기로 만들어진 용기와 그 수용물
- ③ 유리, 도자기 또는 사기로 만들어진 부품 및 그 부품이 제품원가의 50%를 초과하는 완제품

- 제품 도난 및 분실

도난이라 함은 피보험자에 의해 명백히 제3자의 침입이 입증된 경우로서 도난신고가 경찰서에 접수된 경우이며 그 이외의 물건의 망실(忘失)은 분실(紛失)로 간주합니다.

## 불완전포장위험 확장담보 특약

### 제1조(보상하는 손해)

퀵운송서비스 배상책임 특별약관 제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1호의 면책조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아래에 열거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1. 수탁운송화물의 불완전포장과 덮개(차량 부착 덮개 포함)를 불완전하게 설치 한데 기인된 손해를 보상합니다.
2. 타 차량 또는 물체에 충돌없이, 운송차량 내에서 상호 충돌 및 접촉에 기인된 손해를 보상합니다.

###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아래의 사고원인으로 인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비나 눈 또는 이와 유사한 날씨상황에서 덮개를 씌우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2. 운송차량의 잠금 장치를 채우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3. 기타 사고발생의 개연성이 충분히 예상될 수 있을 정도로 수탁화물의 포장 또는 적재(결박)의 방법이 현저하게 잘못됨으로써 발생한 손해

## 중지 & 점검 조항 (코리안 리)

이 조항은 장기계약에 적용하며, 스케줄에 기재된 총 보험기간 동안 담보를 제공합니다. 매년 점검일 도래 30일 이전에 피보험자는 보험자가 위험 진행 상황을 검토할 수 있도록 최신제안서 및 기타 다른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보험자는 다음 점검일까지 담보를 계속해서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나, 만약 다음 사항이 발생한다면 조건을 변경하거나 계약을 취소할 권리를 가집니다.

1. 보험료 납입 조항에 따른 보험료가 지불되지 않았을 경우
2.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었을 경우. 위험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사항들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a. 보험자 혹은 재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사기, 위법행위 및 중대한 허위고지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b. 피보험자가 존속법인 및 지휘하는 당사자가 아닌 경우의 피보험자와 타 기관의 합병
  - c. 모든 해산 준비 및 계획, 피보험자의 법적 집행, 피보험자 지명 및 피보험자의 자산 혹은 사업에 대한 관재인 및 관리인의 지명
3. US\$500,000을 초과하는 발생, 보류 혹은 기지급 손해액이 있을 경우

## 운동 경기중 의료비 담보 특별약관

회사는 이 증권과 그의 특별약관에 포함된 제조건, 제면책 조항, 제규정에 관계없이 피보험자가 합의된 추가보험료를 지불한 조건으로 운동경기중 발생한 의료비를 담보한다.

이 보험계약은 아래와 같은 의료비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가. 피보험자 자신의 「신체장해」

나. 피보험자를 위해 또는 피보험자를 대신해서 고용된 사람, 또는 피보험자에게 세든 사람에 대한 「신체장해」

다. 귀하가 소유 또는 임차하는 시설을 통상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가 입은 「신체상해」

라. 피보험자의 근로자 여부를 불문하고 노동자재해보상에 관한 법률, 폐질급부에 관한 법률, 기타 이와 유사한 법률에 의해 보상되는 「신체상해」

마. 「생산물/완성작업위험」에 포함되는 「신체상해」

바. 담보A에서 보상하지 않는 「신체상해」

사. 선전포고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전쟁 또는 전쟁에 수반되는 사태로 생긴 「신체장해」 전쟁이라는 내란, 폭동, 발란 또는 혁명을 포함합니다.

## 추가피보험자 – 지정된 개인 또는 기관

다음 조항이 이 보험에 적용된다.

명세서의 개인(들) 또는 기관(들)은 피보험자이나, 기명 피보험자가 소유 또는 임차한 지정된 시설로부터 기인한 배상책임에 한한다.

## 기본보험 – 지정된 계약

본 보험의 조건 항목에 명시된 타보험 항목의 규정에 관계 없이, 다음에 명시된 조항은 명세서의 지정된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보장에 적용된다.

피보험자가 본 보험이 적용되는 손실에 소멸형 또는 보장형 타보험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회사의 책임은 다음과 같이 제한된다.

본 보험은 기본보험이며, 타보험 또한 기본보험이지 않은 경우, 회사의 의무사항에는 영향이 없다. 타보험 또한 기본보험인 경우, 회사는 다음의 B 항에 명시된 방법에 따라 모든 해당 보험사와 책임을 공유한다.

모든 타보험에서 동일한 책임 부담을 허용하는 경우, 회사는 본 방법을 따른다. 이 경우, 해당 보험사는 적용 가능한 보험 한도 또는 손실이 남지 않을 때까지 동일한 금액을 지불하며, 기간 적용은 둘 중 먼저 도래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다른 보험에서 동일한 보장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한도에 따라 보장을 한다. 이 경우, 각 보험사의 부담비율은 모든 보험사의 적용 가능한 총 보장한도에 대한 적용가능한 보장 한도를 기준으로 한다.

## 실리카 부담보

이 증권은 다음과 관련되어 제기된 배상책임에 대하여 적용하지 않음에 합의합니다.

1) 실리카, 석면이 포함된 물질 또는 화합물의 취급, 제거, 철거, 저장, 운송 또는 처분

2) 법령에서 정한 노동 관련 규정의 통제 하에서 실시되는 조사

다음 사항에 적용되지 않음에 추가 합의합니다.

a) 실리카 또는 실리카가 포함된 물질 또는 화합물의 흡입, 섭취, 존재, 노출에 의한 것이거나, 원인으로 주장되거나,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기인되거나, 발생한 직간접적인 배상책임

b) 실리카가 포함된 건물 혹은 구축물의 철거 또는 실리카를 포함한 물질 또는 화합물로 인해 실질적이거나 주장된 건강상 유해한 상태의 결과로서의 배상책임

c) 상기 a) 또는 b)의 결과라 주장하며 피보험자에 대하여 제기된 청구 또는 소송에 대항하는 책무, 또는 그로부터 유발된 방어비용에 대한 보험회사의 배상책임

이 증권상의 기타 보험조건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 전자파 (EMF), 석면, 실리카 위험 부담보 특별약관

본 보험에 포함된 어떤 조항에도 불구하고, 전자파, 석면, 실리카에 의해 발생한 손해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보험료 정산특약

보험계약자는 아래와 같이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습니다.

- ① 매월 첫날부터 말일까지의 변동사항에 대하여, 추가보험료는 익월( )일까지 회사에 납입되어야 합니다.
- ② 제 ①항에 따라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추가된 날 이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행정제재비용보장 특별약관

다른 상충되는 조항 등이 보험 혹은 배서에 없는 한, 회사는 과태료로 인한 손실을 지급하기로 동의한다. 여기서 과태료는 대한민국의 'OOOO법'을 위반하여 수반되는 사고로, 이 보험증권에 의해 담보되어야 한다.

행정상의 벌칙금은 계약자가 지급해야 할 민사 및 행정상의 벌금 및 벌칙금을 의미한다. 행정상의 벌칙금은 고의적인 행위나 누락으로 발생한 벌칙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위 조항은 '행정상의 벌칙금'부분에만 우선 적용된다. 다른 벌금 및 벌칙금은 여전히 면책된다.

다른 조항 및 조건들도 여전히 동일 적용된다

## 인격침해 및 광고침해 담보 특별약관

### 1. 회사의 책임범위

가. 회사는 이 보험으로 담보되는 「인격침해」 또는 「광고침해」로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추가지급조항에서 지급대상으로 명기되어 있는 금액(또는 서비스)만을 지급(또는 제공)합니다. 회사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다만,

- (1) 회사가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개인 또는 단체가 「인격침해」 또는 「광고침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의해 지급할 최고액을 한도로 합니다.
- (2) 회사는 손해배상청구 및 소송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 및 화해를 할 수 있습니다.
- (3) 회사는 이 보험의 보상한도액까지 손해액을 지급함으로써 회사의 방어권리 및 의무는 종료됩니다.

나. 이 보험에서 담보되는 「인격침해」라 함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 (1) 「담보지역」내에서 보험기간 중 발생한 인격침해
- (2) 피보험자의 사업수행 중 발생한 인격침해. 그러나, 귀하 또는 귀하를 위한 광고, 출판물, 라디오방송, TV 방송으로 발생한 인격침해는 보상되지 아니합니다.

다. 이 보험에서 담보되는 「광고침해」라 함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 (1) 「담보지역」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광고침해
- (2) 피보험자의 제품 및 서비스에 관한 광고로 발생한 광고침해

### 2. 면책조항

이 보험계약은 아래의 침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가. 아래의 사유에 의한 「인격침해」 또는 「광고침해」

- (1) 허위임을 알면서도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의해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자료의 공표로 발생한 경우
- (2) 보험기간 개시 전에 구두 또는 서면 자료가 최초로 공표되어 발생한 경우
- (3) 피보험자의 또는 피보험자의 동의 하에 고의적인 형법위반으로 발생한 경우
- (4) 계약에 의하여 가중된 경우. 그러나 계약이 없었더라도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나. 아래의 사유로 인한 「광고침해」

- (1) 계약을 위반한 경우. 그러나 묵시계약상 광고기획의 유용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2) 제품 또는 서비스가 광고된 품질 또는 성능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3) 제품, 서비스의 가격표시가 잘못된 경우
- (4) 광고, 라디오방송, 출판물 또는 TV 방송을 사업으로 하는 피보험자에 의해 위법으로 발생한 경우

## 과실탈만 담보 특별약관

이 증권에 포함된 제조건, 제면책 조항, 제규정에 관계없이 이 특별약관은 보험명세서에 명기된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의 고용인의 부주의한 행위, 과실 또는 태만에 기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보상할 것을 동의합니다.

부주의한 행위, 과실 또는 태만은 명세서에 명기된 피보험자의 업무수행과 관련되어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보상한도액:

## 오기 및 탈루 조항

직접적인 물리적 손실, 손상 오류 또는 실수로 인한 누락으로 인해 지급되지 않는 경우 보험료 납입 및 면책사항 및 조건, 제한사항을 고려하고 본 확장담보가 추가될 경우

1. 피보험자의 재산 사항이 물리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2. 모든 사항에 대해 포함
  - a) 이 증권상의 효력발생일에 피보험자에 의해 소유, 임대 또는 리스 되거나
  - b) 이 증권상의 기간 동안 피보험자에 의해 구매, 임대 또는 리스 되거나
3. 이 증권상에 제외된 재산 사항에 대해

이 증권은 오류 또는 실수로 누락된 부분에 대해 직접적인 물리적인 손실이나 손해에 대한 확장하여 담보된다. 오류 또는 실수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는 발견되거나 수정되면 즉시 언더라이터에게 보고되어야 한다. 언더라이터는 이 확장된 담보 1사고당 책임범위 이상으로 책임지지 않는다.

## 임차자 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담보A. 신체장해 및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면책조항은 피보험자가 임차한 시설에 끼친 손해에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이 담보에 대해 스케줄에 기재된 별도의 보상한도를 적용합니다.

기타 보험조건은 변동없습니다.

## 소급 배상/판매 특약

다음 내용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 보험은 스케줄 상 기재된 소급일 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대인 및 대물 사고를 담보하지 않습니다

또한 스케줄 상 기재된 소급일 이후 피보험자가 제공하거나 제조한 제품에 대해서만 담보합니다.

이외 다른 조건은 원계약에 따릅니다.

## 계약상 가중책임 부담보 특별약관

회사는 피보험자의 타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증가한 손해에 대하여는 담보하지 아니합니다

## 야생동물피해 확장담보 특별약관

이 특약은 제1장 담보「A」의 면책조항「나」의 단서조항 (1)을 적용합니다.

### 가. (보상하는 손해)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정한 조례에 따라 보상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 1)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의 담보지역 내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이하 '농업인 등'이라 합니다)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산림작물/수산양식물(이하 '농작물 등'이라 합니다)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입음으로써 피보험자가 정한 조례에 따라 농업인 등에게 보상함으로써 입은 손해
  - 2)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의 담보지역 내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농업인 등이 사육중인 가축이 직접 축체에 피해를 입음으로써 피보험자가 정한 조례에 따라 농업인 등에게 보상함으로써 입은 손해
  - 3)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의 담보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농업·임업의 생산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상의 피해를 입음으로써 피보험자가 정한 조례에 따라 주민에게 보상함으로써 입은 손해
- ②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최초로 농업인 등 또는 주민에 의하여 제기된 피해신고에 한하여 피보험자가 피해보상을 할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 나. (피해보상청구 일자)

위 「보상하는 손해」가 ②의 “보험기간 중에 최초로 농업인등 또는 주민에 의하여 제기된 피해신고”의 기준은 농업인 등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등 또는 사육중인 가축이 직접 축체에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입은 날이 아닌, 피해를 입은 사실을 발견한 후 피보험자에게 피해보상을 청구한 날로 봅니다.

### 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 ①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1) 계약자나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
  - 2) 이 계약의 보험기간의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자에 대하여 제기된 피해보상청구로 인해 발생한 손해
  - 3)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 5)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
  - 6) 위 제5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 7)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
  - 8) 법령 등 규정에 의해 금지된 지역에서 경작지에서의 피해보상 청구로 인해 발생한 손해
  - 9) 농업인 등이 농작물 등 또는 가축에 대한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피해보상청구로 인해 발생한 손해

라.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야생동물: 야생동물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1호에 해당하는 산, 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동물종을 말한다.

(2)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

2) 농작물: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 4호에 해당하는 식용작물, 공예작물, 사료작물, 비료작물, 원예작물, 버섯작물 및 뽕나무를 말합니다.

3) 산림작물: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 5호에 해당하는 소득을 목적으로 재배하는 묘목, 유실수, 조경수, 산림버섯, 산채류, 야생화 그 밖의 임산물을 말합니다.

4) 수산양식물: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 13호에 해당하는 어가가 양식하는 어패류, 해조류 그 밖의 수산 동식물을 말합니다.

5) 가축: 「축산법」 제2조 1호 및 「축산법시행규칙」 제2조에서 규정하는 가축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을 말합니다.

6) 농업인: 「농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7) 임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 「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8) 어업인: 「수산업법」 제2조 제12호에 따라 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자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9) 주민: 피보험자의 담보지역내에 일정한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사람 30일 이상 머무를 목적으로 일정한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가진 사람. 30일 이상 머무를 목적으로 일정한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가진 사람. 30일 이상 머무를 목적으로 일정한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가진 사람.

10) 가축피해: 야생동물로부터 가축 축제(가축의 몸체를 말한다)에 상해를 입거나 폐사한 경우를 말합니다.

11) 인명피해: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으로 신체상에 피해를 입은 경우를 말합니다.

12) 조례: 지방자치단체로서의 피보험자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야생동물의 피해보상 관련 근거를 마련한 법령을 말합니다.

## 증기 공급 실패 또는 불안정 담보 특별약관

반대 조항이 없을 시 보험회사는 보험기간 동안 피보험자의 증기 공급 실패 또는 불안정으로 인한 제3자의 신체 상해 또는 제3자의 재산 피해로 발생하는 피보험자의 손해를 담보합니다

위 스케줄 조건:

1. 공급 실패 또는 불안정은 피보험자가 발전 설비 및 / 또는 변속기를 적절하게 유지, 교체 또는 개조 하지 못한 직접적인 결과는 아니어야 함
2. 공급 실패 또는 불안정은 피보험자의 생산력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함으로 인한 결과가 아니어야 함.
3. 계약으로 인해 가중된 모든 손실은 제외되어야 함
4. 신체 상해 또는 재산상의 손해의 결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금융 손실이 제외되어야 함

보험회사가 본 특별약관상 담보하지 않는 보상 청구로 주장하는 경우 입증책임은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특별약관은 보험증권 상 본 특별약관이 첨부되지 않았을 경우 담보되지 않는 어떠한 책임도 확장하여 담보하지 않습니다.

## 도로에서의 사고 보장제외 특별약관

이 보험은 공공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무면허 장비조작 보장제외 특별약관

이 보험은 면허증 없이 장비조작을 함으로써 발생한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보험사고 협조조항

회사는 이 보험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제규정에 관계없이 동 보험증권상 아래 전제조건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a) 피보험자는 담보 목적물과 관련하여 발생한 보험사고 또는 그러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인지된 상황이 있을 경우 즉시 회사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 (b) 피보험자는 회사에 보험사고 또는 사고 개연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모든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회사가 인지하고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c) 피보험자는 보험자에게 통보된 사고와 관련하여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한 손해조사인과 조사 및 사정업무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합니다.

## 다수 피보험자 조항

- i) 스케줄 상 다수의 피보험자가 명기되고, 각각의 피보험자가 독립체일 경우, 개별 피보험자에게 각각 독립증권이 발행된 것과 같이 보험담보를 제공합니다. 개별 피보험자에게 보상하는 보험자의 총 보상한도의 합은 이 증권에 명기된 보험가입금액이나 특약과 메모랜덤에서 설정된 개별 보상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합니다.
- ii) 이 보험증권에서 보험금청구를 발생시키는 사고로 인하여, 보험자가 1개 혹은 그 이상의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지급된 보험금은 해당 지급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가 모든 피보험자에게 보상할 보상한도 및 총 보상한도를 감액시킵니다.
- iii) 보험사고시, 개별 피보험자는 항상 계약상의 다양한 권리와 개별보험자가 합의한 내용 및 계약상의 구제방법을 보전합니다.
- iv) 보험자는 이 증권 상에서 피보험자의 사기나 중대한 부실고지 및 중대한 사실에 대한 불고지, 보증 및 단서 조항에 대한 위반의 경우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지는 보상책임은 면책되고 피보험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보험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책임의 무효조항)
- v) 그러나, 보험자의 보상책임을 무효화 시키는 개별 피보험자의 행동은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은 다른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 권리를 해하지 아니합니다.
- vi) 보험자의 보상책임을 무효화 시키는 행위로 말미암아 현재 혹은 그 이전에 피보험자로서의 지위도 불구하고 보험자가 대위권리를 행사해야만 하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항하여 취득하는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 vii) 하나 또는 다수의 피보험자에 의해 저질러진 보험자의 보상책임을 무효화 시키는 행위의 경우에(단, 대출자를 제외하고) 해당 피보험자는 보험자의 보상책임을 무효화 시키는 행위의 사유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대하여 어떠한 보상도 본 증권에서 적용받지 아니합니다.

## 간접손해 부담보 특별약관

이 보험은 사고로부터 수반되는 간접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먼지 및 소음 부담보

회사는 먼지 또는 소음 관련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습니다.

## 전자기장 부담보 특별약관

이 보험은 아래사항으로부터 비롯되는 사고에 대하여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a)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기장에 의하거나, 사고의 원인으로 알려지거나, 기인된 직간접적인 배상책임
- (b) 전자기장으로 인한 재산 가치의 감소
- (c) 전자기장으로 인한 신체장해 및 재물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에 제기된 클레임 또는 소송에 대항하기 위한 책무

##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보장 특별약관

### 제1조(적용범위)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제조업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보장대상은 피보험자(제조업자)의 제조물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1. “제조물”이란 제조물 책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것으로써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합니다.
2. “제조물”은 피보험자가 시공한 작업(완성작업)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 제2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호 및 10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결과로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금액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손해를 끼칠 의도를 가지고 제조물을 공급한 경우.
2. 보험사고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해 발생한 경우. 단, 피보험자가 파산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보상합니다.

### 제4조(보장지역)

이 특별약관은 보험사고가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비브리오 패혈증 등 부담보 조항

이 조항은 비브리오 패혈증, 광우병, 수족구병, 전자기장, 석명, 먼지, 미세먼지 및 효능 불발취에 관한 배상책임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 포크리프트 조항

이 조항은 옥외 광고판 및 피보험자 구내의 포크리프트 운영에 의한 배상책임을 담보합니다.

## 포괄담보 조항

이 약관은 재산종합보험 배상책임 부문에 적용합니다.

보험계약자와 보험사는 이 약관이 보험계약자가 보험조건대로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구내를 담보한다에 동의합니다.

각 사업의 형태 및 담보위험에 대한 보상한도는 증권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개시일 전에 보험사에게 예상 산출기초로 계산된 예치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보험 계약자는 모든 구내와 지역뿐만 아니라 각 소재지별 사업의 운영기간을 증권에 명기되어 있는 일자까지 매월 통보해야 합니다.

보험자는 보험 만기 후에 추가 및 환급 보험료를 청구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추가 보험료가 있다면 즉시 납입되어야 합니다.

보험사는 보험료를 검사하기 위해 보험 계약자의 문서를 조사하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관련 문서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감사에 필요한 문서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보험사는 보험 계약을 취소하거나 감사완료 전까지 보험금 지급은 연기할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 부담 조항

- 보험자의 책임한도: 제3자 배상책임보상한도액의 ( %)

- 피보험자 부담비율 조항: ( %)

- 보험자의 책임범위는 아래와 같이 계산됨

(총발생사고금액 - 자기부담금) × (100% - 피보험자 부담비율)

여타한 경우라도 보험자의 책임범위는 보험증권에 명기된 보상한도액 특별약관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경비업자 특별약관( 1 )

### 제1조 (사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회사가 보상할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아래에 기재된 경비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말합니다.

### 제2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근로자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아래의 배상책임
  - 가.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나. '가'목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5.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6.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7. 자동차, 항공기 및 선박의 소유, 사용, 관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주택의 경비업무로 생긴 신체장해 및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단독주택의 경비업무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9. 불특정 다수인의 출입이 허용되는 사업장의 근무시간중의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전기적 사고로 생긴 화재 폭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경보. 기계경비에 있어서 경보. 기계설비의 고장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화폐, 수표, 유가증권, 인지, 금, 은 등의 보석류, 시계, 모피류, 글. 그림류, 골동품, 설계도, 장부, 원고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3. 타인의 불법적인 체포, 구류, 유치, 구금, 무고, 명예훼손, 사생활침해, 불법침입, 축출, 기타 다른 사적 점유권의 침해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4. 총포류, 도검류, 경비건의 사용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5.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의한 폭행, 구타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6. 행사, 경기, 흥행 등 다수대중이 참여 또는 관람하는 시설 및 장소의 경비업무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7. 결격사유가 있는 경비원의 고용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8. 사실상 경비업무를 폐업 또는 휴업한 후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9.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0. 피보험자가 경비하는 재물의 간접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임차, 사용하는 재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2.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배상책임
23. 피보험자의 채무불이행이나 이행지체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4. 가입여부를 묻지 않고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5.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제3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공동주택담보 추가특별약관

### 제1조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경비업자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8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제2조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 업무시간담보 추가특별약관

### 제1조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경비업자 특별약관(1)의 제2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제9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인의 출입이 허용되는 사업장의 근무시간중의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제2조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 보험기간 중 재검토 조항

보험개시일로부터 ( ) 개월 후의 누적 손해율이 ( )% 를 초과할 경우 계약자와 보험회사는 상호 합의에 따라 보험조건 또는 보험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은 배서가 실행된 날짜 이후 추가된 위험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누적 손해율: (누적 지급 보험금 + 재검토 시점의 지급 준비금 + 누적 조사비용) / 납입 보험료(예치보험료 포함)

## 사이버위험부담보 조항

### 1. Electronic Data Exclusion (전산 데이터 제외)

증권안의 어떠한 반대의 조항과 그 배서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이 선행하는 것으로 합니다.

a) 본 증권은 어떠한 원인에 의한 손해, 파괴, 변형, 삭제를 보상하지 않으며, 어떤 원인이나 사선이 동시에 일어나거나 또는 어떤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결과든지 개의를 개치지 않고 사용상의 손해, 기능상의 저하 그리고 그러므로 발생하는 비용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전자DATA는 커뮤니케이션과 해석, 조사를 위해 전자 또는 전자기계적 자료조사에 의해, 그리고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조사와 조작을 위한 기구를 포함한 전기적으로 컨트롤되는 장치에 의해 유용한 형식으로 전환된 사실, 정보, 개념을 뜻합니다.

컴퓨터 바이러스는 컴퓨터시스템이나 네트워크를 통해 스스로 번식하는 암호, 악의적으로 유포된 믿을 수 없는 지시를 포함하는 일련의 해롭고 타락한 지시나 암호를 의미합니다.

컴퓨터 바이러스는 '트로이목마', '벌레', 'TIME OR LOGIC BOMB'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b) 그러나 위의 a) 단락에서 서술된 어떤 것에 의하여 명기된 위험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모든 범주와 건과 예외에 영향을 받는 이 증권도 직접적인 명기된 위험에 의한 물리적 손해를 담보할 것이다.

명기위험

화재

폭발

### 2. 증권안의 어떠한 반대의 조항과 그 배서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이 선행합니다.

증권 상에 담보되는 전자DATA PROCESSING 기관이 증권상에 담보된 물리적 손해를 입을 경우, 그 손해액 가치평가기초는 (DATA가) 삭제된 기관에 이전의 원본이나 백업으로부터 전자DATA를 카피 하는 비용입니다.

이 비용들에는 그러한 전자DATA의 조사와 공사뿐만 아니라 재생산, 수집, 조합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 그 전자DATA PROCESSING 기관이 수리, 대체, 복구되지 않으면 가치평가기초는 내용이 삭제된(날아간) 기관의 비용이 됩니다.

그러나 이 증권은 피보험자나 다른 어떤 측에게, 설령 그 DATA가 다시 만들어질 수 없고, 수집되고 조합될 수 없다 하여도 그리고 그 전자DATA의 가치가 아무리 많다 하여도 담보하지 않습니다.

## 정보기술조항

이 조항에서 재물 손해란 실질적인 재물에 발생한 물리적 손해를 의미한다.

재물에 발생한 물리적 손해는 데이터 또는 소프트웨어에 발생한 손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특히, 원형에서 변형되거나 변조 또는 삭제로 인하여 데이터,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발생한 유해한 변화는 재물 손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결론적으로 다음의 손실 또는 손해들은 이 조항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다.

- A. 원형에서 변형되거나 변조 또는 삭제로 인하여 데이터,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발생한 유해한 변화, 같은 데이터 또는 소프트웨어에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및 이러한 손실 또는 손해로 야기된 기업휴지 손해. 그러나 이 면책조항에도 불구하고, 재물에 발생한 담보되는 물리적 손해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데이터 또는 소프트웨어에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는 담보된다.
- B. 데이터,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작동, 유용성, 사용범위, 또는 접근성에의 손상으로부터 야기된 손실 또는 손해 및 이러한 손실 또는 손해로 발생한 기업휴지 손해.

## 감염병 면책 조항 [LMA5399]

1. 본 보험 계약상 반대되는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감염병 또는 감염병에 대한 (실제 또는 인식된) 공포 및 위협으로 인해 피보험자에 직간접적으로 야기, 기여, 기인되거나 원인 또는 연관이 되어 발생하는 모든 실제 또는 추정 손실, 배상책임, 피해보상, 상해, 병, 질병, 사망, 의료 비용, 방어 비용, 일반 비용, 경비 또는 기타 비용은 본 보험의 보상 범위에서 제외되며, 그러한 손실 등의 발생에 기여하는 다른 원인이 동시에 혹은 어떠한 순서에 따라 발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외됩니다.
2. 본 보험계약에서 사용되는 감염병이라는 용어는 어느 한 유기체에서 다른 유기체로 어떠한 물질 또는 매개체를 통해 전파되는 모든 질병을 의미하며 아래의 경우가 해당됩니다.
  - 2.1. 해당 물질 또는 매개체에는 바이러스, 박테리아, 기생충 또는 기타 유기체나 그 변종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으며, 살아있다고 인식되는지 여부는 불문함
  - 2.2. 직간접적으로 전파되는 형태에는 공기 중 전염, 체액을 통한 전염, 물체의 표면 또는 고체, 액체, 기체 등의 물체를 통한 전염, 또는 유기체 간의 전염 등이 포함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 2.3. 해당 질병, 전염 물질 또는 매개체가 신체 상해, 질환 및 정신적 피해 또는 인간의 건강과 안위에 대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그러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협이 되는 경우 또는 재물의 피해를 야기하거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협이 되는 경우